

발간등록번호

11-1721000-000494-10

수탁 / 2023-03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24. 2. 29.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연구개발기간 : 2023.1.1. ~ 2023.12.3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2. 29.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구명희

참여연구자 : 강아현

이경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공고번호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2 (정책결정/집행)		50 %	SB1199 (공공정책)		30 %	SB9999 (정치/행정)		20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	-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영문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영문	The Study on indirect - cost ratio allocation and system management of National R&D Funding for non - profit corpora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구명회		직위		연구위원				
연구개발기간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 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326,000	-	-	-	-	-	-	326,000	-	326,000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없음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실무담당자		성명		강아현		직위		연구원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9일

연구책임자: 구 명 회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정 병 선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요약 문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2 (정책결정/집행)	50 %	SB1199 (공공정책)	30%	SB9999 (정치/행정)	2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3. 1. 1.~ 2023. 12. 31.											
총 연구개발비		총 326,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6,000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									
		전체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4~2025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약 152개 기관 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추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필요									
연구개발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4~2025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160개 기관)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사항 발굴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고시자료로 활용 ○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반영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해당 사항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학물	신물질	
				1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타	
		논문 개재	학술 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안전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국제 협력	(정책) 홍보		포상 ·수상
				1			2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영문핵심어 (5개 이내)		National R&D project		Non-profit corporation		Indirect-cost ratio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4~2025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합리적인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4~2025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회계 전문법인을 활용한 간접비실사비율(안)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사항 발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산출기준 마련)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4~2025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160개 기관)
 - (제도개선사항 발굴)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최종보고서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23	최종보고서	2024.2.29.	11-1721000-000494-10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1	고시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2024.2.29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안건 상정

번호	상정위원회	안건명	상정일자	안건내용
1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2023.3.21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심의·의결
2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2023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2024.1.5	20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찬성 여부를 심의·의결

☐ 제도 개선

번호	제도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추진일자	개선내용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정책)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홍보효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기타 성과]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2) 목표 달성 수준

추진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안)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3.21)	·10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의결 및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의결('24.1.11)을 하였고, 심의·의결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24.2.29)	·100%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정 사항 발굴	·100%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자체 보완활동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해당사항 없음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통해 모든 대학에 동일한 합리적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기여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향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효율에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발굴사항은 2024년도에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활용할 계획임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요약문

◆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배경

□ 대학에 대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필요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필요
-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간접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II. 연구내용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4~2025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대학 분야
 - 회계사가 소속된 전문 회계법인을 활용한 간접비실사비율(안)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사항 발굴

III. 연구결과

□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세부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세부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기준 결정
- 2023년도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시부터 적용사항
 -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승수) 기준 변경

변경전	S	A	B	C	D	E	F
	+10%	+7.5%	+5%	+2.5%	0	-5%	-10%

변경후	연구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F등급 70점 미만
	대 (250억 이상)	10%	6%	3%	0%	-3%	-10%
	중 (250억 미만~ 100억 이상)					-2%	-6%
	소 (100억 미만)					-1%	-3%

○ R&D 계수 적용사업(4개 사업→7개 사업)

변경전	• BK21플러스사업(0.5) • 산학협력고도화지원(0.5)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 대학혁신지원사업(0.5)
변경후	• 4단계 두뇌한국21사업(0.5) ('14~) •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0.5) ('14~)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14~) • 대학혁신지원사업(0.5) ('19~) •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0.5) ('21~)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사업(0.25) ('22~)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0.25) ('22~)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회계 전문법인을 활용한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 대학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및 대학별 관계자 대면 검증 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간접비실사비율(안) 도출
- 일부 대학에 대하여 2~3명의 검증위원이 1~2회 추가 심층 검증을 수행
-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조정계수(3.9%)를 적용한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별간접비고시비율을 최종 확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6]에 고시('24.2.29)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현황(총괄)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참여 대학 161개 중 50점 미만 대학(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등을 제외한 152개 대학의 간접비 원가 산출

산출대상	원가산출	비 고
161개	152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50점 미만 8개 대학*, 간접비 산출 미신청 대학 1개(신한대학교)

* 연구지원체계평가 50점 미만 대학 8개 : 광주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성결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평택대학교, 홍익대학교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	가천대학교	26.38	3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32	극동대학교	5.19
3	가톨릭대학교	25.55	33	금오공과대학교	25.28
4	강남대학교	14.54	34	나사렛대학교	16.33
5	강릉원주대학교	22.86	35	남부대학교	24.13
6	강원대학교	23.25	36	남서울대학교	30.13
7	건국대학교	30.14	37	단국대학교	23.90
8	건양대학교	28.33	38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39	대구대학교	24.46
10	경기대학교	21.06	40	대구한의대학교	25.24
11	경남대학교	26.68	41	대전대학교	23.15
12	경북대학교	26.55	42	대진대학교	30.13
13	경상국립대학교	22.40	43	덕성여자대학교	29.96
14	경성대학교	20.14	44	동국대학교	25.61
15	경운대학교	10.48	45	동덕여자대학교	22.65
16	경인교육대학교	13.15	46	동명대학교	25.46
17	경일대학교	20.99	47	동서대학교	23.10
18	경희대학교	23.78	48	동신대학교	21.27
19	계명대학교	23.64	49	동아대학교	26.09
20	고려대학교	23.98	50	동양대학교	11.76
21	고신대학교	29.09	51	동양미래대학교	5.19
22	공주대학교	24.92	52	동의대학교	21.76
23	광운대학교	26.72	53	명지대학교	29.34
24	광주대학교	20.31	54	명지전문대학	5.19
25	광주여자대학교	5.19	55	목원대학교	28.74
26	국립군산대학교	20.58	56	목포대학교	15.25
27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2.98	57	목포해양대학교	18.30
2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58	배재대학교	27.68
2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59	백석대학교	28.21
30	국민대학교	20.04	60	부경대학교	23.02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61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62	부산대학교	20.65
63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64	부천대학교	15.32
65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66	삼육대학교	32.10
67	상명대학교	27.63
68	상지대학교	29.09
69	서강대학교	29.87
70	서경대학교	21.93
7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72	서울교육대학교	11.88
73	서울대학교	24.69
74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5.54
75	서울시립대학교	26.77
76	서울여자대학교	20.11
77	서원대학교	27.23
78	서일대학교	14.03
79	선문대학교	27.62
80	성결대학교	5.19
81	성공회대학교	9.54
82	성균관대학교	22.93
83	성신여자대학교	29.96
84	세명대학교	20.72
85	세종대학교	25.11
86	수원대학교	22.30
87	숙명여자대학교	24.69
88	순천대학교	19.42
89	순천향대학교	21.42
90	송실대학교	26.22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91	신라대학교	27.84
92	아주대학교	25.99
93	안동대학교	19.36
94	안양대학교	23.80
95	연세대학교	26.96
96	영남대학교	24.38
97	영산대학교	15.51
98	용인대학교	12.62
99	우석대학교	28.13
100	우송대학교	28.42
101	울산과학대학교	7.28
102	울산대학교	21.53
103	원광대학교	25.91
104	위덕대학교	16.39
105	육군사관학교	9.98
106	을지대학교	21.19
107	이화여자대학교	27.54
108	인덕대학교	18.37
109	인제대학교	22.20
110	인천대학교	26.30
111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112	인하대학교	27.40
113	전남대학교	22.50
114	전북대학교	19.84
115	전주대학교	27.00
116	제주국제대학교	21.42
117	제주대학교	24.89
118	제주한라대학교	5.19
119	조선대학교	26.93
120	중부대학교	21.27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21	중앙대학교	23.34
122	증원대학교	31.24
123	차의과학대학교	29.74
124	창신대학교	18.21
125	창원대학교	23.84
126	청운대학교	20.32
127	청주대학교	12.59
128	춘천교육대학교	14.22
129	충남대학교	22.56
130	충북대학교	22.04
131	평택대학교	5.19
132	포항공과대학교	23.19
133	한경국립대학교	24.78
134	한국공학대학교	20.98
135	한국교원대학교	18.16
13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137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1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13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140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41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14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2.20
14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3.81
144	한국체육대학교	20.50
145	한국항공대학교	29.96
146	한남대학교	23.91
147	한동대학교	24.54
148	한라대학교	20.32
14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22
150	한림대학교	18.30
151	한밭대학교	26.30
152	한서대학교	29.82
153	한성대학교	25.53
154	한신대학교	10.63
155	한양대학교	26.11
156	한양여자대학교	13.94
157	협성대학교	19.47
158	호남대학교	21.92
159	호서대학교	28.69
160	홍익대학교	5.19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3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4
제2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5
제1절 추진근거	8
제2절 추진경과	8
제3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0
제4절 가·감률 기준	11
제3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결과	13
제1절 산출 개요	15
1. 대상기관	15
2. 공고 및 설명회	15
3. 산출절차	18
4. 제출자료	18
5. 산출방법	20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47
제4장 대학 간접비지출내역서 분석	53
제1절 개요	55
제2절 분석결과	55
제5장 결 론	59
[붙임]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63

표 목 차

〈표 2-1〉 2023년도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11
〈표 2-2〉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기준	11
〈표 2-3〉 '23년도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12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12
〈표 3-1〉 기초자료 제출 목록	18
〈표 3-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47
〈표 3-3〉 '23년도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47
〈표 3-4〉 2023년도 대학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49
〈표 4-1〉 간접비지출내역서 분석 대상 기관	54
〈표 4-2〉 간접비지출내역서 항목별 평균	55
〈표 4-3〉 연간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간접비지출내역서 항목별 평균	56
〈표 4-4〉 대학 간접비 집행 추이, 2012-2021	56

그 림 목 차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4
[그림 3-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18
[그림 3-2]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변동 추이('10~'23)	48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간접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서 간접비의 비중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가 필요
- 이러한 간접비 비중의 증가추세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대학별로 적절한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2조 제1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2년 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는 간접비계상기준 적용 대상 기관 및 산정에 관한 사항 심의·확정
-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방식, 산출절차 등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대학별 2024~2025년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기초자료 작성지침 개선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소속 회계 및 간접비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비산출소위원회를 통한 간접비 제도 개선 추진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도출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 용역을 활용한 대학별 간접비실시비율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시비율(안)에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기관별 가·감률을 반영하여 '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24. 2. 29)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체계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제 2 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서류검토 회의('23.7.3~7)
 - 대학 제출 서류에 대한 형식적·내용적 타당성 검토
 - 대학별 수정·보완 서류 제출 항목 도출
-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대면 검증(7.12~7.25)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검증(8.3, 8.29, 9.20, 10.20, 12.6/5회)
 -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적용기준 확정 등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12.7)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12.7~12.18)
- '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12.21)
- '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에 대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안건 심의('24.1.11)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고시(2.29)

제1절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 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계상기준 적용 대상 기관 및 산정에 관한 사항 확정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23.3.21/제1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 기관 및 세부 산출기준 확정
- '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공고 : '23.4.13, 재공고 : '23.4.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설명회('23.4.20, KIRD 온라인)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접수('23.4.21~'23.6.30)
 - ※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참여 대학(157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서류검토 회의('23.7.3~7)
 - 대학 제출 서류에 대한 형식적·내용적 타당성 검토
 - 대학별 수정·보완 서류 제출 항목 도출
-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대면 검증(7.12~7.25)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검증(8.3, 8.29, 9.20, 10.20, 12.6/5회)
 -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적용기준 확정 등
 -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가 참여 대학에 대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가 실시(~9.22)
-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12.7)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12.7~12.18)
- '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12.31)
- '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에 대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안건 심의('24.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24.2.29)

제3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대학 간접비실사비율(원가산출식) = A + B

$$\blacksquare A(\text{연구지원부문}) = \frac{\text{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text{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text{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text{연간연구비}}$$

$$\blacksquare B(\text{공통지원부문}) = \frac{(\text{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text{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연구수익비율}}{\text{연간연구비}}$$

※ 대학운영 비용을 ① 연구지원부문(A), ② 교육지원부문, ③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산출 원칙

○ 2개(2021, 2022) 회계연도 간접비 실지출율을 원가산출식에 따라 계산(A+B) 후 산술평균하여 간접비실사 비율 산정

○ 연구지원부문(A)

- 연구를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 중 간접비 사업비 항목의 연구관리운영비* 반영

* 연구지원비(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및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학교회계*의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중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진흥 경비로 반영

*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 공통지원부문(B)

-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연구수익비율* 적용

*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연구수익비율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결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되, R&D계수 적용사업은 R&D계수에 따라 각각 반영

○ 간접비실사비율에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정

- 실사율에 따른 대학별 상한기준 적용

〈표 2-1〉 2023년도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실사율	40%p 이상	35%p 이상	30%p 이상	28%p 이상	28%p 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원가산출) ± C(가·감률)

- 간접비 원가산출 후(대학은 상한기준 적용 이후) 가·감률 적용

- 대학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대학, 2023년도 연구지원평가 미참여 대학 및 점수가 50점 미만인 대학, 간접비실사비율이 5% 미만이거나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을 각각 5% 적용

제4절 가·감률 기준

□ 대학별 간접비 원가 산출 후 가·감률 기준을 적용

○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표 2-2〉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기준

연구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250억 이상)	10%	6%	3%	0%	-3%	-6%	-10%
중 (250억 미만~ 100억 이상)					-2%	-4%	-6%
소 (100억 미만)					-1%	-2%	-3%

(예시1) 간접비실사비율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규모 “대”인 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 0.06%p”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승수) 기준

〈표 2-3〉 '23년도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2개 회계연도 누계)	감률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0% 적용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6% 적용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3% 적용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예시2) 간접비실사비율이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수익규모 “대”, 기관별 벌점 누계 20점 초과 시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 (1 + (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 부실자료제출 감률)) = 23% × (1 + (0.06 - 0.03%)) = 23.69%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
 (최대 -3%p)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p	0.6	1.8%p
2건	3%p	0.7	2.1%p
3건	3%p	0.8	2.4%p
4건	3%p	0.9	2.7%p
5건 이상	3%p	1.0	3.0%p

(예시3) 상기 예시2에 추가하여 부당자료 적발·통보 1건인 경우 : 23.69% - 1.8%p = 21.89%

※ 간접비 사용용도 위반의 경우에도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기준에 따라 감률 적용함

◇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시 가·감률 적용방법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정 후 아래 순서대로 가·감률 적용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 (1 + ①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 ②부실자료제출 감률)} + ③부당자료제출 감률

제 3 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결과



제1절 산출 개요

1. 대상기관

☐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포함)

☐ 산출 대학 현황

-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161개) 중 9개 대학*을 제외하고, 152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50점 미만 대학 8개 : 광주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성결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평택대학교, 홍익대학교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 대학 1개 : 신한대학교

2. 공고 및 설명회

☐ 1차 공고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428호
- 공고내용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산출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대상기관 :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은 5% 적용
 -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대학
 -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대학
 - 2023년도 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
-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부(붙임 3 표준 템플릿 참조)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작성지침 및 템플릿 온라인 설명회 : 2023. 4. 20(목), 14:00~16:4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 설명회
 - ※ 온라인 접속방법은 k2base에 추후 공지
- 신청기간 : 2023. 4. 21(금) ~ 6. 15(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 산출절차 :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대면검증, (3단계) 이의신청 심의, (4단계)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위원회 심의, (5단계) 고시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강아현 연구원/구명희 연구위원 (043-750-2760, kahyun@kistep.re.kr/043-750-2313, mhgu@kistep.re.kr)

【붙임 1】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부.

【붙임 2】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부.

【붙임 3】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표준 템플릿 1부.

【붙임 4】 K2Base 홈페이지 이용방법 1부.

□ 설명회

- 일시 : 2023.4.20.(목) 14시-16시40분
- 방식 : 실시간 온라인 Zoom
- 내용 : 대학 간접비 산출기준,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표준 템플릿 설명(질의응답은 추후 F&A로 제공 예정)
- 자료 : 첨부된 붙임[1,2,3]파일(별도의 발표 자료는 없으며, 산출 공고 시 안내드린 자료와 동일)
- 링크 : <https://us06web.zoom.us/j/6981636841?pwd=QU9BeVUrbkd5SFN2Q2grY3BUODhrdz09>
- ID : 698 163 6841

일시 및 장소	일정 및 내용	발표자
2023.4.20(목) 14- 16시40분	(14시-14시10분) Zoom 입장 및 오리엔테이션	-
	(14시10분-14시20분) 산출기준 설명	구명희 KISTEP 연구위원
	(14시20분-15시40분)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이두영 회계사 동남회계법인
	(15시40분-15시50분) 휴식	-
	(15시50분-16시40분) 표준 템플릿 설명 및 마무리	박형근 회계사 이정회계법인

□ 2차 공고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471호
- 주요 수정사항 : (당초) 신청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 6월 15일(목) →
(수정) 신청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 6월 30일(금)
- 공고일 : 2023년 4월 24일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 <산출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3. 산출절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따라 KISTEP에서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산출하고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계상기준 고시

※ 고시 적용기간 : 당해 년도 계상기준 고시일 ~ 다음 계상기준 고시 전일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추진사항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및 서식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학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 기관별 의견 수렴 및 보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그림 3-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4. 제출자료

- 기본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2개년도 결산자료 등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표 3-1〉 기초자료 제출 목록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0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엑셀	필수	○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한글/ PDF	필수	○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국립대학/사립대학)		엑셀	필수	○
3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날인본		PDF	필수	○
4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4-1.(국립)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엑셀/ PDF	필수	○
		4-2.(사립)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엑셀/ PDF	필수	○
5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	5-1.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엑셀/ PDF	필수	○
		5-2.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엑셀/ PDF	필수	○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6	학교회계 외부감사보고서		PDF	필수	X
7	산학협력단 외부감사보고서		PDF	필수	X
8	정보공시 내용	8-1. 연구비 수혜실적	엑셀	필수	O
		8-2. 부설연구소 현황	엑셀	필수	O
		8-3. 장학금 수혜혜택	엑셀	필수	O
		8-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_인력현황	엑셀	필수	O
		8-5. 교사(敎舍)시설 확보 현황	엑셀	필수	O
9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9-1.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9-2. 인건비와 결산서 대사검증	엑셀	예시	O
		9-3. 대학 부서별 업무내역/업무분장표	엑셀	예시	O
		9-4. 공시자료와 인원수 대사	엑셀	예시	O
		9-5. 대학 조직도	자유형식	필수	X
		9-6. 대학 전화번호부	자유형식	필수	X
		9-7. 연구소별 연구내역(연구소 인력 반영시만)	엑셀	필수	O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10-1. 산학협력단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10-2. 인건비와 결산서 대사검증	엑셀	예시	O
		10-3. 산학협력단 부서별 업무내역	엑셀	예시	O
		10-4. 공시자료와 인원수 대사	엑셀	예시	O
		10-5.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10-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집행문서	자유형식	예시	X
		10-7. 연구소별 연구내역(연구소 인력 반영시만)	엑셀	필수	O
		10-8. 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엑셀	필수	O
1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11-1. 기관 공통 비용	엑셀	필수	O
		11-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엑셀	필수	O
		11-3.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엑셀	필수	O
		11-4. 연구실안전관리비	엑셀	필수	O
		11-5. 학생산재보험료	엑셀	필수	O
		11-6. 연구보안관리비	엑셀	필수	O
		11-7. 연구윤리활동비	엑셀	필수	O
		11-8. 연구활동지원금	엑셀	필수	O
		11-9. 과학문화활동비	엑셀	필수	O
		11-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엑셀	필수	O
		11-11. 기술 창업 출연·출자금			
		11-12.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원칙) 또는 11-12.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간편법)	엑셀	필수	O
12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내역	12-1. 연구진흥경비 세부내역	엑셀	필수	O
13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3-1. 정부 제출자료	자유형식	필수	X
		13-2. 근거자료	자유형식	필수	X
14	공통지원관리운영비 내역	14-1. 공통지원관리운영비 조정금액 내역	엑셀	필수	O
		14-2. (국립)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엑셀	필수	O
		14-3. (국립)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내역 안분	엑셀	필수	O
		14-4. (국립) 코러스 자료	엑셀	필수	O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14-5. (사립)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총괄	엑셀	필수	O
		14-6. (사립)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엑셀	필수	O
15	공공요금 산출내역	15-1.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 자료 요약	엑셀	필수	O
		15-2. 공공요금 배분양식	엑셀	필수	O
		15-3. 공공요금 청구 및 집행내역	엑셀	필수	O
		15-4. 분기별 청구공문 및 이체확인증	엑셀	필수	X
16	연간연구비	16-1.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산정내역(원칙) 또는 16-2.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산정내역(간편법)	엑셀	필수	O
17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내역	17-1.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내역	엑셀	필수	O
18	연구수익비율 내역 등	18-1.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국립대학 양식을 사용하는 대학만 작성)	엑셀	필수	O
		18-2. R&D계수 적용사업 수익 근거자료	자유형식	필수	X
19	간접비 관련 규정	19-1. 간접비 관리규정	자유형식	필수	X
		19-2. 연구개발능력성숙도 산정기준	자유형식	필수	X
20	간접비 지출내역서 (* 2020회계연도부터 제출)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엑셀	필수	O
		20-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엑셀	필수	O

☐ 별도자료: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자료

5. 산출방법

가. 대면검토

☐ 제목 : 2023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대면검증 실시 (2021 및 2022회계연도)

☐ 대상 :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평가결과 50점 이상 대학

* 50점 미만 대학은 미확정

☐ 일정 : '23. 7. 12(수) ~ '23. 7. 21(금), 8일/KISTEP 서울 평가회의장(서울역)

1회차(09:30-11:00)	2회차(11:00-12:40)	중식
3회차(13:30-15:00)	4회차(15:10-16:40)	5회차(16:50-18:20)

□ 방법

- ① 단계별 실사 : (1차) 전체 대학에 대하여 기본 체크리스트 사항*을 점검하여 단순오류 사항을 검증하고, 이후 (2차) 각 대학별로 유선 또는 대면 실사를 통해 심층 검증 수행

* 기본 체크리스트 사항 : 간접비 산출항목간의 불일치, 학교 결산서 수치와의 불일치 등 단순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사항

- ② 맞춤형 실사 : 실사의 효과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간접비 실사방법(대면여부, 검증 투입인원)을 조정

대학 구분	(평균)연간 연구비 수준	대상 대학 수 (*1)	검증담당 인원	심층검증 방법	심층실사 일정
小규모	약 65억원 미만	58	담당 1인 (총 5인)	유선실사 (전화질의)	7.10 ~ 31 (이메일 통보)
中규모	약 65억원 ~ 약 500억원	67	담당 1인 (총 5인)	대면실사	7.13 ~ 17 (3일)
大규모	약 500억원 이상	32	담당 2인+ 총괄	대면실사	7.18 ~ 21 (4일)
합 계		157	(필요시) 추가실사		7.24 ~ 25 (2일)

※ 대면실사가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의 大中小 분류와는 다름

□ 추진계획

- 첫째주(7.3~7.7) : 전체 대학에 대하여 기본 체크리스트 사항을 점검하여 단순오류 사항을 검증
- 둘째주(7.10~7.14) : 업무기간 중 소규모 대학 실사(유선), 수~금요일부터 중규모 대학 실사(대면)
- 셋째주(7.17~7.21) : 월~금요일까지는 대규모 대학 실사(대면)

〈대학 간접비 실사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7/3	7/4	7/5	7/6	7/7
업무	기본 체크리스트 사항 점검				
날짜	7/10	7/11	7/12	7/13	7/14
업무	소규모 대학 실사		중규모 대학 실사		
날짜	7/17	7/18	7/19	7/20	7/21
업무	대규모 대학 실사				

□ 기타

○ (제출자료) 산출 관련 인쇄자료 1부

※ 2021·2022 회계연도 산출 관련 자료(표준 템플릿,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증빙서류 등) 및 필요시 노트북 1대

○ (요청사항)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학별 2~3인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 및 주차권 제공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 권고

□ 검증 프로세스

일정	구분	검증 단계	비고
6월말	대학	• 산출 기초자료 1차 제출	• (제출방식) K2Base에 업로드
7월 중	검증단	• 산출 기초자료 1차 검증 (대면 및 서면검증 병행)	• 필요 시 대면검증 추가 실시 가능
	검증단	• 수정 필요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 (구두 또는 이메일 통보)	• 필요 시 추가 통보 가능
8월	간접비 산출소위	•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 통보(8.9일) - 8.22일까지 제출 요청	•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 하고, 소명서는 별도 제출
	대학	• 산출 기초자료 추가 보완 제출 - 8.22일까지 제출	• (제출방식) K2Base에 업로드
9월	간접비 산출소위	• 대학에서 제출한 소명서 검토	• 2023년 대학 간접비 자가검증 체크리스트에 소명의견이 없는 경우 소명서 미제출로 간주
	검증단	• 산출 기초자료 추가 보완 검토 - 산출소위의 소명서 검토결과 반영 및 대학에서 제출한 추가 보완자료 검토 - 각 대학에 실사비율 검증결과 안내 ① (추가 보완 수정사항이 없는 대학) 검증완료 처리하고, 추후 해당 대학에 검증결과 안내 ② (추가 보완 수정사항이 있는 대학)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에 검증결과 안내	
	대학	• 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 ① (추가 보완 수정사항이 없는 대학) 검증결과를 수령하였음을 검증단에 회신 ② (추가 보완 수정사항이 있는 대학)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K2Base에 재 제출 ※ 추가 보완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소명의견 제출 가능	• ②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 하고, 소명서는 별도 제출 • 이후 점검과정에서 추가 보완 수정사항을 선 반영하지 않았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검증단 및 간접비 산출소위	• (검증단) 대학 제출자료 및 소명의견에 대해서 재검토 후 간접비 산출소위에 안건 상정 • (산출소위) 안건에 대한 검토	②에 해당하는 대학만 적용
	검증단	• 대학에 산출소위 최종 검토결과 통보	
	대학	•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K2Base에 최종 제출	②에 해당하는 대학만 적용
9~10월	KISTEP	• 대학에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대학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동의 공문 발송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따른 최종 산출 기초자료 (날인본 포함)제출	• (제출방식) K2Base에 업로드
	※ 이의신청 프로세스 (해당 시) [별첨2] 참조		
	대학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은 이후 KISTEP 안내에 따라 진행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 대학별 이의신청서 심의·의결	
	KISTEP	• 대학에 이의신청서 결과 통보	

□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대면검증 세부 일정

○ 둘째주(7.12~7.14) : 중규모대학 검증위원(회계사) 1인 대면검증

일자	시간	1팀	2팀	3팀	4팀	5팀
7.12 (수)	(09:30~11:00)	송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11:10~12:40)	순천향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서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3:30~15:00)	한림대학교	목포대학교	원광대학교	계명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15:10~16:40)	동아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16:50~8:20)	인제대학교	공주대학교	인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동대학교
7.13 (목)	(09:30~11:00)	한국항공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11:10~12:40)	을지대학교	창원대학교	상명대학교	한남대학교	동서대학교
	(13:30~15:00)	대전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건양대학교	안양대학교	-
	(15:10~16:40)	대구대학교	-	청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
	(16:50~18:20)	동의대학교	-	선문대학교	경남대학교	-
7.14 (금)	(09:30~11:00)	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의원대학교
	(11:10~12:40)	세명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성대학교	우송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13:30~15:00)	우석대학교	안동대학교	동명대학교	중부대학교	-
	(15:10~16:40)	대구한의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서대학교	-	-
7.24 (월)	(09:30~11:00)	서강대학교		-	-	-
	(11:10~12:40)	상지대학교	안동대학교	-	-	육군사관학교(*)
	(13:30~15:00)	-	한국교통대학교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5:10~16:40)	-	금오공과대학교	-	-	-

(*) 연구수익비율 100% 제출 대학(2023 최초 제출)에 대한 특례 대면검증

※ 해당 대학은 실사 시작 10분 전에 13층 대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셋째주(7.17~7.21) : 대규모대학 검증위원(회계사) 2~3인(총괄 회계사 포함) 대면검증

일자	시간	1팀	2팀
7.17 (월)	(09:30~11:00)	가톨릭대학교	세종대학교
	(11:10~12:40)	부산대학교	국민대학교
	(13:30~15:00)	단국대학교	울산대학교
	(15:10~16:40)	동국대학교	영남대학교
7.18 (화)	(09:30~11:00)	충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1:10~12:40)	전북대학교	아주대학교
	(13:30~15:00)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15:10~16:40)	경상국립대학교	인하대학교
7.19 (수)	(09:30~11:00)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11:10~12:40)	조선대학교	-
	(13:30~15:00)	부경대학교	경희대학교
	(15:10~16:40)	제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7.20 (목)	(09:30~11:00)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11:10~12:40)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13:30~15:00)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15:10~16:40)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 소규모대학(58개) 검증위원(회계사) 1인 유선 및 이메일 검증(일정 미확정, 개별 연락)

1팀	2팀	3팀	4팀	5팀
대진대학교	호남대학교	삼육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한신대학교
광주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남서울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양여자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경운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용인대학교	강남대학교
중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청운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서일대학교	동양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인덕대학교	영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위덕대학교	창신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림국제 대학원대학교	국립암센터국제 대학원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남부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동신대학교	
평택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 추가 검증이 필요한 대학(16개) 담당 3인(총괄 회계사 포함) 대면검증

- 추가 대면검증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9:00~18:00

- 추가 대면검증 장소 : 서울역 연세세브란스 빌딩 KISTEP 평가회의장 22층

일자	시간	대학명	장소
9.1(금)	(09:00~09:25)	서강대학교	서울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중회의실
	(09:30~09:55)	명지대학교	
	(10:00~10:25)	가천대학교	
	(10:30~10:55)	남서울대학교	
	(11:00~11:25)	한밭대학교	
	(11:30~11:55)	대진대학교	
	(12:00~12:25)	경기대학교	
	(12:30~12:55)	점심식사	서울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13:00~13:25)		
	(13:30~13:55)	동명대학교	
	(14:00~14:25)	동신대학교	
	(14:30~14:55)	서원대학교	
	(15:00~15:25)	을지대학교	
	(15:30~15:55)	대구한의대학교	
	(16:00~16:25)	순천향대학교	
	(16:30~16:55)	인천대학교	
	(17:00~17:25)	한국항공대학교	
	(17:30~17:55)	숙명여자대학교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시행으로 추가 산출 신청한 3개 대학(광주여대, 극동대, 홍익대) 포함하여 13개 대학 (추가) 대면검증 실시

- 추가 대면검증 일시 : 2023년 9월 25일(월), 26(화)

- 추가 대면검증 장소 : 서울역 연세세브란스 빌딩 KISTEP 평가회의장 13층, 22층

일자	시간	대학명	장소
9.25(월)	(10:00~10:25)	극동대학교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중회의실
	(10:30~10:55)	중원대학교	
	(11:00~11:25)	제주대학교	
	(11:30~11:55)	광주대학교	
	(12:00~12:25)	광주여자대학교	
	(12:30~13:25)	점심식사	
9.26(화)	(10:00~10:2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10:30~10:55)	경희대학교	
	(11:00~11:25)	한국외국어대학교	
	(11:30~11:55)	국민대학교	
	(12:00~13:25)	점심식사	
	(13:30~13:55)	선문대학교	
	(14:00~14:25)	호서대학교	
	(15:00~17:00)	홍익대학교	
	(17:00~17:25)	연세대학교	

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1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8. 3(목) 10:00~12:3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 안건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적용방안 논의
 - 간접비 관리제도 혁신방안 방향 설정 논의 등

□ 2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8. 29(화) 10:00~18:0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중회의실
- 안건
 - 대학 간접비실사비용 산출 관련 주요 이슈 논의 및 결정
 - 향후 간접비실사비용 산출 및 검증 추진계획 논의 등

□ 3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9. 20(수) 10:00~16:0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안건
 - 대학 간접비실사비용 산출 관련 주요 이슈 논의 및 결정
 - 향후 간접비실사비용 산출 및 검증 추진계획 논의 등
 - 일부 대학 간접비실사비용 산출을 위한 소명

일자	시간	대학명	장소
9.20(수)	(10:00~10:15)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서울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대학당 소명 5분, 질의·응답 10분)
	(10:15~10:30)	가천대학교	
	(10:30~10:45)	숙명여자대학교	
	(10:45~11:00)	순천향대학교	
	(11:00~11:15)	목포대학교	
	(11:15~11:30)	조선대학교	

□ 4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10. 20(금) 10:00~16:0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 안건
 - 대학 간접비실사비용 산출 관련 주요 이슈 논의 및 결정
 -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인정 여부 등
 - 향후 간접비실사비용 산출 및 검증 추진계획 논의 등

- 일부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소명

시간	대학명	참석 여부	비고
(10:15~10:30)	한밭대	참석	제도혁신센터-3068 (23.9.27) 대학이 제출(23.10.13)한 소명의견에 대하여 대면 설명 요청
(10:30~10:45)	서울대학교		
(10:45~11:00)	전북대학교	미참	
(11:00~11:15)	호서대학교	참석	
(11:15~11: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참	
(11:30~13:00)	점심식사		

□ 5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12. 6(수) 10:00~13:0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중회의실
- 안건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유예사항 반영결과 및 이슈사항 논의
 - 20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결과(안) 타당성 검토 등

2023년 대학간접비 관련 추가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23. 07. 20, KISTEP 제도혁신센터)

※ 아래 사항에 적용되는 대학은 대면검증 이후라 하더라도 확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산출 기초자료를 5 영업일 이내에 K2Base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추후 부당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230720 추가 확인 및 수정 제출 자료(OO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 확인 및 수정 자료 제출 사항 :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 (예시)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
-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 분장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편법에 따라 정보공시 중에서 연구기획과 연구관리만을 연구지원인력으로 인정하고 그외 업무는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

〈별지 제1-1호, 제2-1호 서식 참조〉

- ☐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 연구지원부문_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 공통지원부문_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인력

○ 확인 및 수정 자료 제출 사항 :

- 국가R&D 연구실적에 비해서 과도한 인건비를 간접비대상 인건비로 반영한 경우 R&D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투입시간(타임리포트 확인 필요) 등의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인정한도를 증명하는 경우 인정
- 다만,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편법에 따라 “연구실적x직전 고시비율”을 인건비 인정한도로 적용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심의사례(비공개자료)〉

□ 심의사례

- 수주실적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를 간접비로 반영한 경우 합당한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아 인정한도를 결정하되, 해당 업무와 R&D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투입시간 등을 검토하여 결정

□ 공공요금

- 대상 : 공공요금의 간접비 실사비율 인정을 요청한 대학
- 확인 및 수정 자료 제출 사항 : 건물별 계량기 사진 (전기/수도/가스) 반드시 제출
 - 첨부한 「별첨1 건물별 계량기(전기)」와 「별첨2 건물별 계량기(수도)」를 참조하여 건물별 계량기 사진을 추가 증명자료로 제출
 - 건물별 계량기 사진 미제출시 건물별 계량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공요금을 불인정으로 분류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4. 공공요금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회계처리 할 것

- ㉔ 개별 건물별로 사용량이 계량 가능하며, 대학에 총괄 청구된 금액을 청구기준으로 건물별로 배분
- ㉕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장관에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㉔에서 건물별로 배분한 금액을 해당 건물의 연구시설비율로 배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심의사례(공개자료)〉

□ 심의사례

- 산출기준상 공공요금 불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특히 건물별 계량이 안되는 경우 등)에는 불인정 처리됨에 유의

(*) 공공요금 불인정기준

- ① 비용배분을 건물별 연구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캠퍼스 전체 면적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 ② 배분된 비용을 학교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지 않고 반기, 기말 등 일괄 정산하는 경우
- ③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대학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전입금 등으로 수입처리하는 경우

□ R&D계수 적용사업

- 대상 : R&D계수 적용사업이 있으나 간접비 산출양식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
- 확인 및 수정 자료 제출 사항 : R&D계수 적용사업을 간접비 산출양식에 추가로 반영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등의 R&D계수 적용사업의 여부를 대학(교비) 회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간접비수익이 없는 대상 사업은 사업별 R&D계수를 0%로 적용
 - 해당 수익이 학교회계(대학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경우 산출양식 「1-2-3(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에 기재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 유의사항

- 대상 : 하기 심의사례(리모델링비용, 연구공간 임차료, 장려금성 여비, 물품성 장려금, 연구마일리지로 집행된 자문료·회의수당·연구원 인센티브, 경비용역비, 연구장비)에 해당 되는 항목이 있는 대학
- 확인 및 수정 자료 제출 사항 : 하기 심의사례를 적용하여 대학에서 산출 기초자료를 수정하여 제출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심의사례(공개자료)〉

용역비, 임대료 등의 연구관리 운영비	□ 요청사항 ○ 리모델링비용, 임대료, 장려금성 여비, 차입금성 상환(BTL로 추정), 물품성 장려금(직접비 집행품목) 등이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운영비 및 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항목별 집행내역 내용(일부만 발제함) 및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리모델링비용 : 학교회계전출금 성격임 - 임대료 및 임대료성 비용 : 학교회계전출금 성격임 - 장려금성 여비 : 공통 불인정항목임 - 물품성 장려금 : 노트북 등 구입액 - 차입금성 상환액 : 차입금 상환액은 불인정항목임
	□ 지침 ○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를 결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불인정항목을 제외하고 연구관리운영비로 인정하며 기관공통지원경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인정
	□ 심의사례 ○ 연구공간 임차료, 간접비재원으로 취득한 연구지원장비, 에너지저장사업 지급액, 노후시설 교체비용은 기관공통지원경비의 간접비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불인정됨에 유의

연구 마일리지제도	☐ 요청사항 ○ 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의 명칭이 「연구마일리지」이며,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자체기준을 만들고 운용함 ○ 연구마일리지제도는 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명칭이며, 관련 예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간접비 항목을 기준으로 집행하였음. ○ 지침의 지출항목 및 사용 심의사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간접비 사용용도로만 집행 가능 - 연구과제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신청 가능(중복지급 불가) - 자문료, 회의수당, 연구원 인센티브 성격은 지출 불가 ○ 위와 같이 연구마일리지 제도는, ①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②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명칭을 연구마일리지라고 기술한 것이며,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간접비 집행 가능 항목을 기준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④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용도에 맞게 집행을 예산을 원가계산 항목에 반영하였음. ○ 위와 같은 사유로 인정요청 ☐ 심의사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마일리지 합계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수익의 10% 이내이면 인정, 간접비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됨에 유의
연구시설 경비용역 대금의 연구관리 운영비	☐ 요청사항 ○ 대학에서 계약을 체결한 유·무인 경비구역 대금 중 대학에서 산정한 연구동 및 비 연구동 비율에 따라 연구동 해당분을 계약업체가 산단에 청구하여 비용처리함 ○ 원가산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전체 용역비를 건물별 경비 투입인원, 무인경비기계 대수에 따라서 건물별 용역비를 계산한 후 해당 건물이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는 연구, 아닌 경우에는 비 연구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대학에서 총괄 계약하고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월별로 직접 집행하였으므로 원가산출 인정 요청 - (연구시설 유·무인 경비구역 대금 지급) ① 경비구역의 경우 공공요금처럼 개별 건물별로 사용량 측정이 불가하고, 원가산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산학협력단, 연구소,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연구동, 그 외 건물을 비 연구동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② 경비구역 지급 대금 관련 계약은 대학에서 총괄 계약하고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월별로 직접 집행함. ○ (연구시설 유·무인 경비구역 대금 지급) 원가산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산학협력단, 연구소,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연구동, 그 외 건물을 비연구동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대학에서 총괄 계약하고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월별로 직접 집행하였으므로 원가산출 인정 요청 ☐ 지침 ○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 지원비를 결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불인정항목을 제외하고 연구관리운영비로 인정하며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인정 ☐ 심의사례 ○ 산단회계에서 지출한 경비구역비는 연구비율 등 임의적 방법에 의한 원가배분이므로 합리적인 원가 배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인정됨에 유의

대학연구활동 지원금 중 연구소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	□ 요청사항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대학연구활동지원금 중 장려금으로 PC등 구매(연구실 사용목적)로 불인정사항 반영 부분은 교내 연구소 인프라조성 지원사업으로 연구소 단위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단과대학, 교육연구원,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원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대형장비 위주로 필요 장비를 신청 받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도입 타당성 심의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하여 지원 - 구매목록 예시: 증폭기(Amplifier), 온도조절기(Temperature controller), 단백질 전기영동 세트 (Protein electrophoresis system), 수직형 전기영동 세트(Electrophoresis system), 진탕 배양기(Shaking incubator) 등 - 연구소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으로 구매한 장비는 개인소유가 아닌 단과대학 등 소속 기관으로 일괄 기부채납 - 위와 같은 사유로 교내 연구소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은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불인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 요청 □ 지침 ○ 산출지침에서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공통 불인정항목 : 장려금 혹은 인센티브 집행액(신임교수 정착금/장려금, 장/단기 국내외 연수, 동아리 혹은 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장려금성 혹은 정액지급 논문게재료, 공모과제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지원금) □ 심의사례 ○ 직접비 성격의 연구장비 구입은 간접비 사용용도와 맞지 아니하며, 연구장비의 경우 1억원 이상만 구매 가능하므로 불인정됨에 유의
---	--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

(‘23.8.8, KISTEP 제도혁신센터)

※ 공지사항(중요)

1. 지난 7.20일 KISTEP은 “2023년 대학간접비 관련 추가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을 공지하였으며, 그 요청사항에 적용되는 각 대학은 대부분 K2Base에 추가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기초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각 대학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추가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대학 간접비를 적정하게 산출하기에는 기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자료의 제출 및 대학 자체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대학은 기존에 추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하기의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한 산출 기초자료를 본 요청사항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2Base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기초자료 제출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함께 첨부하여 드린 별첨2. 체크리스트와 별첨3. 추가검증 템플릿 제출 시, 작성자와 확인자의 서명, 그리고 총장 명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 ② 추가 기초자료의 파일명은 “230808 2차 추가 확인 요청자료(OO대)”로 작성해 주시며, 반드시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십시오.
 - ③ 하기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 ④ 올해 8.30일 공시예정인 정보공시 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주십시오.
 - 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벌점 및 감률 기준」제9조에 따르면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에 관계없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⑥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하고, 벌점은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대학간접비 관련 주요 추가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2차]

※ 하기 내용은 “주요” 추가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이므로, 별첨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전체 산출 기초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표준템플릿 8번]

□ 연구수익

- 대상 : 전체 대학
- 목적 : 대학에서 제출한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중에서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구분하여 교육수익으로 재분류
- 확인 요청사항
 - 표준템플릿 8-1-1.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8-1-2. 연구수익 조정, 8-1-3. 국가R&D실적 판단을 작성
 - 표준템플릿 내용을 이용하여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별지 제1-2호/제2-2호 서식 수정
 - ※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작성
 -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등은 연구수익에서 제외
 - ※ 산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산서 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혜실적(국가 R&D실적) 상 금액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함에 유의
 -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음
 - 국가R&D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판단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국가R&D 실적 판단도 수정 필요

[표준템플릿 9번]☐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 부문으로 분류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
-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 분장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
- 표준템플릿 9-1-1. 개인별 업무내역을 추가로 작성

☐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 (템플릿 10번 포함)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자료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 개인별 연간 전체 문서생성 목록을 분석하여 연구지원 문서생성 목록을 별도로 산출
- 다만,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

☐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을 한 인력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 연구지원 업무의 범위는 연구기획, 연구과제 협약 체결, 연구관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업무임
- 연구지원 업무 실적에 대한 위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불인정

[표준템플릿 10번]

□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 부문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
- 표준템플릿 10-1-1. 개인별 업무내역을 추가로 작성
-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직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대학에서 지출한 인건비를 대학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불인정(학교회계전출금 성격)
- 산학협력단의 2021년과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표준템플릿 11번]

□ 연구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 산단회계 관리운영비 중에서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대학에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학교회계전출금 성격)
- 지출 거래처가 대학인 경우 불인정(학교회계전출금 성격)
- 리모델링비용, 연구공간 임차료, 장려금성 여비, 물품성 장려금, 연구마일리지로 집행된 자문료·회의 수당·연구원 인센티브, 경비용역비, 연구장비는 불인정
 - ※ 추가로 체크리스트 참조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아래 법률에 근거한 연구활동을 위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대상으로 집행한 비용만 인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함

[표준템플릿 12번]☐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원금으로 집행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불인정(중복지원)

[표준템플릿 15번]☐ 공공요금

○ 대상 : 공공요금의 간접비 실사비율 인정을 요청한 대학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건물별 계량기 사진 (전기/수도/가스) 및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계량일지(과거 2년간 및 최근 사진상 측정된 수치 확인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

- 첨부한 「별첨1 건물별 계량기(전기)」와 「별첨2 건물별 계량기(수도)」를 참조하여 건물별 계량기 사진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
- 건물별 계량기 사진 및 계량일지를 미제출 시 건물별 계량이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공요금을 불인정으로 분류
- 표준템플릿 15-2. 공공요금 배분 수정 제출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별지 제1-2호/제2-2호 서식]☐ R&D계수 적용사업

○ 대상 : R&D계수 적용사업이 있는 대학

○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 : R&D계수 적용사업을 간접비 산출양식에 반영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기 제출대학은 제외)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RIS사업) 등의 R&D계수 적용사업의 여부를 대학(교비)회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간접비수익이 없는 대상 사업은 사업별 R&D계수를 0%로 적용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RIS사업은 간접비수익이 없으므로 0%로 반드시 조정

- 해당 수익이 학교회계(대학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경우 산출양식 「1-2-3(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에 기재
- 특히 대학(교비)회계 결산서상 반영된 수익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임의로 제외할 경우 허위자료 제출 및 고의 제출로 간주될 수 있음(별점 및 감률 기준 제5조(허위자료 제출), 제7조(고의))

'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중요 유예사항 안내

(‘23. 11. 27, KISTEP 제도혁신센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 관련하여「전국 산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의견서에 대한 회신」(23.9.19일)에서 “추가 자료 및 소명서 중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간접비 비율을 산출할 예정임”이라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산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의견서」의 건의사항과 각 대학에서 제출한 보완자료 및 소명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KISTEP과 간접비산출소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연구수익 재분류 관련 항목과 단과대학 행정실 등 일부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에는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2025년부터 적용)결정을 하였습니다(상세내용은 별첨 1 참조).
이는 해당 항목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공지나 설명이 되지 않아 대학에서 결산서를 수정하고 관련 검증자료를 미리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대학마다 적절한 검증자료 제출이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별첨 1]의 유예사항을 반영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조정자료(별첨 2 참조)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하기 행정사항에 따라 조정자료를 11월 30일(목) 12시까지 K2Base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사 항 -

- ① 조정사유가 포함된 유예 요청 공문(산단장 명의 가능, 자유양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정사유 예시 : 별첨1의 주요 유예사항(11.27일 K2Base 공지사항)의 경우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적용하기보다는 사전 안내 미 공지 및 대학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산출 시부터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② 모든 기초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별첨 2)의 “대학 간접비 조정사항 요약표(엑셀파일, 직인이 날인된 요약표 PDF파일)”를 제출하시되, 조정사항이 반영된 “2021년/2022년 국립(사립)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엑셀파일, 총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PDF파일)” 최종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조정자료 파일명은 “231130 조정자료(OO대)”로 작성해 주시며, 반드시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십시오.
※ 유예 조치 반영을 희망하지 않는 대학은 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조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별첨1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유예사항

① 연구수익 재분류 관련

- (유예 전) 지난 8.8일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중에서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구분하여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 (유예 후)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에는 결산서상 연구수익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함. 따라서 일부 연구수익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유예 조치함
 - ※ 협의회 의견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산서의 연구수익을 조정하더라도 연간연구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과 원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함
- 따라서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산출양식에서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금액을 삭제할 수 있음
 -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별지 제1-2호(국립)/제2-2호(사립) 서식 조정
- [주의사항] 다만,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에서 연간 연구비 총액 판단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국가R&D 실적 판단은 기존 8.8일 요청사항 기준을 유지함
 - 다만, 연구수익 분류 관련하여 결산서상 심각한 왜곡이 확인된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할 예정임

②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관련

- (유예 전) 지난 8.8일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 및 9.27일 「보완자료 및 소명서 제출 공지사항」에서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되는 경우”의 조건에 “연구지원을 하는 인력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연구지원 문서생성 목록) 제출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나,
- (유예 후)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에는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유예함. 따라서 증명자료가 없어도 아래의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예 조치함

2)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및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 혹은 연간 연구비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교양과목 교육을 위한 학부대학 행정지원인력은 전체를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 상기 내용 이외의 상세내용은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참조

- 조정 후 인건비 금액은 6.30일까지 최초로 제출했던 인건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3]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 관련

- (유예 후)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도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에는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유예함. 따라서 증명자료가 없어도 ① 국가 R&D 연간연구비 1억 이상인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② 국가 R&D 연간연구비 1억 미만인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③ 국가 R&D 연간연구비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예 조치함

다.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12.07)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	가천대학교	A
2	가톨릭관동대학교	C
3	가톨릭대학교	B
4	강남대학교	F
5	강릉원주대학교	B
6	강원대학교	A
7	건국대학교	A
8	건양대학교	D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F
10	경기대학교	D
11	경남대학교	C
12	경북대학교	A
13	경상국립대학교	A
14	경성대학교	C
15	경운대학교	D
16	경인교육대학교	D
17	경일대학교	C
18	경희대학교	A
19	계명대학교	B
20	고려대학교	A
21	고신대학교	C
22	공주대학교	B
23	광운대학교	C
24	광주대학교	C
25	광주여자대학교	F*
26	국립암센터국제 대학원대학교	E
27	국민대학교	A
28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F
29	군산대학교	B
30	극동대학교	F*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31	금오공과대학교	B
32	나사렛대학교	F
33	남부대학교	C
34	남서울대학교	C
35	단국대학교	C
36	대구가톨릭대학교	B
37	대구대학교	D
38	대구한의대학교	B
39	대전대학교	C
40	대진대학교	C
41	덕성여자대학교	B
42	동국대학교	A
43	동덕여자대학교	F
44	동명대학교	B
45	동서대학교	D
46	동신대학교	D
47	동아대학교	A
48	동양대학교	D
49	동양미래대학교	F*
50	동의대학교	B
51	명지대학교	A
52	명지전문대학교	F*
53	목원대학교	C
54	목포대학교	A
55	목포해양대학교	C
56	배재대학교	C
57	백석대학교	F
58	부경대학교	A
59	부산가톨릭대학교	F
60	부산대학교	A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61	부산외국어대학교	C
62	부천대학교	E
63	북한대학원대학교	F
64	삼육대학교	B
65	상명대학교	B
66	상지대학교	C
67	서강대학교	A
68	서경대학교	C
6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
70	서울교육대학교	D
71	서울대학교	B
72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C
73	서울시립대학교	A
74	서울여자대학교	B
75	서원대학교	D
76	서일대학교	F
77	선문대학교	A
78	성결대학교	F*
79	성공회대학교	E
80	성균관대학교	B
81	성신여자대학교	B
82	세명대학교	D
83	세종대학교	A
84	수원대학교	B
85	숙명여자대학교	C
86	순천대학교	A
87	순천향대학교	B
88	송실대학교	B
89	신라대학교	C
90	아주대학교	B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91	안동대학교	E
92	안양대학교	B
93	연세대학교	C
94	영남대학교	B
95	영산대학교	E
96	용인대학교	F
97	우석대학교	C
98	우송대학교	E
9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F
100	울산대학교	B
101	원광대학교	A
102	위덕대학교	F
103	육군사관학교	F
104	을지대학교	C
105	이화여자대학교	B
106	인덕대학교	F
107	인제대학교	B
108	인천대학교	A
109	인하공업전문대학	D
110	인하대학교	A
111	전남대학교	A
112	전북대학교	B
113	전주대학교	B
114	제주국제대학교	F
115	제주대학교	B
116	제주한라대학교	F*
117	조선대학교	A
118	중부대학교	D
119	중앙대학교	C
120	중원대학교	F

* '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21	차의과학대학교	B
122	창신대학교	B
123	창원대학교	B
124	청운대학교	E
125	청주대학교	C
126	춘천교육대학교	F
127	충남대학교	B
128	충북대학교	B
129	평택대학교	F*
130	포항공과대학교	B
131	한경국립대학교	D
132	한국공학대학교	B
133	한국교원대학교	D
134	한국교통대학교	B
13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D
136	한국농수산대학교	C
13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F
13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F
139	한국예술종합학교	E
140	한국외국어대학교	B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4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C
1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
143	한국체육대학교	F
144	한국항공대학교	B
145	한국해양대학교	A
146	한남대학교	A
147	한동대학교	E
148	한라대학교	D
14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F
150	한림대학교	C
151	한밭대학교	B
152	한서대학교	D
153	한성대학교	B
154	한신대학교	D
155	한양대학교	B
156	한양여자대학교	F
157	협성대학교	E
158	호남대학교	D
159	호서대학교	A
160	홍익대학교	F*

라. 최종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12.7~12.18)

☐ 대학에 간접비고시비율 최종결과(안) 통보 : '23.12.7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목적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기관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관의 권익을 보장하
기 위함
-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 : 이의신청 범위는 2023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및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에 한정하며,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내용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이의신청 소명 및 심의 세부 시간

- 대학소명(10분), 심의위원과 대학간 질의·답변(10분), 심의의결서 작성(10분)

이의신청 대학	소명 및 심의시간
심의위원회 사전 회의, 위원장 호선 등	14:00~14:30
서울여자대학교	14:30~15:00
청주대학교	15:00~15:30
한국교통대학교	15:30~16:00
국민대학교	16:00~16:30
휴식	16:30~16:40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6:40~17:10
영산대학교	17:10~17:40
전북대학교	17:40~18:10

○ 위원장 호선 및 진행 : 심의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및 심의의결서 작성

○ 이의신청 신청 대학 : 8개 대학

연번	대학명	이의신청사유
1	서울여자대학교	1) 연구수익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유예조치 되어 조정하였으나 해당내용 불인정을 인정 요청함
2	청주대학교	1) 연구수익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유예조치 되어 조정하였으나 해당내용 불인정을 인정 요청함
3	한국교통대학교	1)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 금액 유예요청 2)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 인력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요청
4	국민대학교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관련 사항 미 반영에 대한 반영 요청
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 사업개발팀 팀장의 “가족회사 관리 운영 업무”로 인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불인정을 인정 요청함
6	영산대학교	1) 자산화금액 가산 시 원칙(선급금으로 집행 후 자산 취득 시 무형자산 등록)을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지식재산권 당기증가액 5,929,000원을 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인정을 요청함
7	전북대학교	1) 기관공통비용 중 업무추진비 집행액 인정요청 2) 기관공통비용 중 대학 측의 산출 내역에 따라 납부한 공공요금 인정 요청 3)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중 의무적 재투자 금액의 예외적 인정 요청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지원 집행액에 대한 인정 요청 5) 국고지원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액 일부 인정 요청

□ 이의신청 심의

- 일시 : 2023. 12. 18(월), 기관당 30분
- 장소 : 서울 연세세브란스 빌딩 22층 중회의실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사유, 소명 내용 및 증명자료 제시 등 설명 (기관당 10분)
- 이의신청심의위원과 이의신청기관 담당자간 질의·응답 등 (20분)

□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 ('23.12.19)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 산출대학 현황

〈표 3-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구분	산출대상	원가산출	비 고
'21년	164개	159개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 3개 대학, 간접비 산출 미신청 대학 1개 및 통합대학 1개 제외
'23년	161개	152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50점 미만 8개 대학*, 간접비 산출 미신청 대학 1개(신한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성결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평택대학교, 홍익대학교

□ 산출결과

- (소위원회 검증 결과) '23년 간접비고시비율 평균은 21.46%로, '21년 25.52% 대비 4.06%p 감소
- (조정계수) 정부R&D 예산감축에 따른 대학의 간접비 수입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학에 동일한 조정계수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은 2년간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내년도 정부R&D 예산 실질 감소율(7.8%)의 절반(3.9%)을 조정계수로 적용
 - 조정계수 적용 방식 : 소위원회 검증 대학별 간접비 비율 $\times$ 1.039
- (조정계수 적용 결과) 조정계수를 적용한 '23년 간접비 비율 평균은 22.30%로 조정, '21년 25.52% 대비 3.2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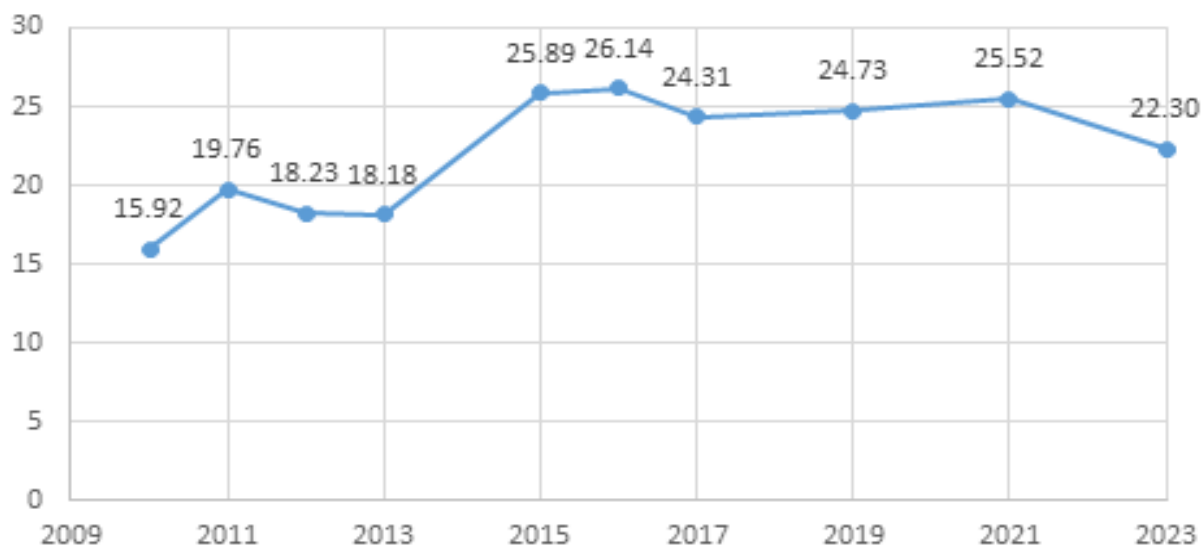
〈표 3-3〉 '23년도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구분	'21년 평균 (A, %)	'23년 평균 (B, %)	증감 (B△A, %p)	조정계수 적용 '23년 평균(C, %)	증감 (C△A, %p)
평균 비율 및 증감 (152개 대학)	25.52	21.46	△4.06	22.30	△3.22

□ 간접비고시비율 평균 변동 추이

- '1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고시하였으며, '16년은 일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수정 고시하였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9	2021	2023
간접비고시비율 평균(%)	15.92	19.76	18.23	18.18	25.89	26.14	24.31	24.73	25.52	22.30



[그림 3-2]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변동 추이(‘10~’23)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표 3-4〉 2023년도 대학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단위: %p)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	가천대학교	26.38
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3	가톨릭대학교	25.55
4	강남대학교	14.54
5	강릉원주대학교	22.86
6	강원대학교	23.25
7	건국대학교	30.14
8	건양대학교	28.33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10	경기대학교	21.06
11	경남대학교	26.68
12	경북대학교	26.55
13	경상국립대학교	22.40
14	경성대학교	20.14
15	경운대학교	10.48
16	경인교육대학교	13.15
17	경일대학교	20.99
18	경희대학교	23.78
19	계명대학교	23.64
20	고려대학교	23.98
21	고신대학교	29.09
22	공주대학교	24.92
23	광운대학교	26.72
24	광주대학교	20.31
25	광주여자대학교	5.19
26	국립군산대학교	20.58
27	국립암센터국제암 대학원대학교	12.98
2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2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30	국민대학교	20.04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3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32	극동대학교	5.19
33	금오공과대학교	25.28
34	나사렛대학교	16.33
35	남부대학교	24.13
36	남서울대학교	30.13
37	단국대학교	23.90
38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39	대구대학교	24.46
40	대구한의대학교	25.24
41	대전대학교	23.15
42	대진대학교	30.13
43	덕성여자대학교	29.96
44	동국대학교	25.61
45	동덕여자대학교	22.65
46	동명대학교	25.46
47	동서대학교	23.10
48	동신대학교	21.27
49	동아대학교	26.09
50	동양대학교	11.76
51	동양미래대학교	5.19
52	동의대학교	21.76
53	명지대학교	29.34
54	명지전문대학	5.19
55	목원대학교	28.74
56	목포대학교	15.25
57	목포해양대학교	18.30
58	배재대학교	27.68
59	백석대학교	28.21
60	부경대학교	23.02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61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62	부산대학교	20.65
63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64	부천대학교	15.32
65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66	삼육대학교	32.10
67	상명대학교	27.63
68	상지대학교	29.09
69	서강대학교	29.87
70	서경대학교	21.93
7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72	서울교육대학교	11.88
73	서울대학교	24.69
74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25.54
75	서울시립대학교	26.77
76	서울여자대학교	20.11
77	서원대학교	27.23
78	서일대학교	14.03
79	선문대학교	27.62
80	성결대학교	5.19
81	성공회대학교	9.54
82	성균관대학교	22.93
83	성신여자대학교	29.96
84	세명대학교	20.72
85	세종대학교	25.11
86	수원대학교	22.30
87	숙명여자대학교	24.69
88	순천대학교	19.42
89	순천향대학교	21.42
90	송실대학교	26.22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91	신라대학교	27.84
92	아주대학교	25.99
93	안동대학교	19.36
94	안양대학교	23.80
95	연세대학교	26.96
96	영남대학교	24.38
97	영산대학교	15.51
98	용인대학교	12.62
99	우석대학교	28.13
100	우송대학교	28.42
101	울산과학대학교	7.28
102	울산대학교	21.53
103	원광대학교	25.91
104	위덕대학교	16.39
105	육군사관학교	9.98
106	울지대학교	21.19
107	이화여자대학교	27.54
108	인덕대학교	18.37
109	인제대학교	22.20
110	인천대학교	26.30
111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112	인하대학교	27.40
113	전남대학교	22.50
114	전북대학교	19.84
115	전주대학교	27.00
116	제주국제대학교	21.42
117	제주대학교	24.89
118	제주한라대학교	5.19
119	조선대학교	26.93
120	중부대학교	21.27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21	중앙대학교	23.34
122	중원대학교	31.24
123	차의과학대학교	29.74
124	창신대학교	18.21
125	창원대학교	23.84
126	청운대학교	20.32
127	청주대학교	12.59
128	춘천교육대학교	14.22
129	충남대학교	22.56
130	충북대학교	22.04
131	평택대학교	5.19
132	포항공과대학교	23.19
133	한경국립대학교	24.78
134	한국공학대학교	20.98
135	한국교원대학교	18.16
13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137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1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13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140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41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14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32.20
143	한국전문문화대학교	13.81
144	한국체육대학교	20.50
145	한국항공대학교	29.96
146	한남대학교	23.91
147	한동대학교	24.54
148	한라대학교	20.32
14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22
150	한림대학교	18.30
151	한밭대학교	26.30
152	한서대학교	29.82
153	한성대학교	25.53
154	한신대학교	10.63
155	한양대학교	26.11
156	한양여자대학교	13.94
157	협성대학교	19.47
158	호남대학교	21.92
159	호서대학교	28.69
160	홍익대학교	5.19

제 4 장

대학 간접비지출내역서 분석



제1절 개요

- 2023년도 간접비 산출 신청 시 대학이 제출한 간접비 지출내역서 분석
 - 160개 대학 중 11개 대학을 제외한 149개 대학*의 간접비지출내역서 (국가사업 및 기타사업) 분석
- * 간접비 지출액 및 학교회계전출금이 수익보다 높아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는 대학 제외 (극동대, 경기대, 광운대, 성결대, 수원대, 울산과학기술대, 인덕대, 제주한라대, 한국공학대, 한국에너지공과대, 한신대)

〈표 4-1〉 간접비지출내역서 분석 대상 기관

연구비 규모별	1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이상	250억 이상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계	상위 20개 대학 별도분석
분석대상 대학 수(개)	7	47	17	26	21	18	13	149	20

제2절 분석결과

- 전체 대학 분석 결과(149개 대학)
 - 전체현황
 - 총수익(기초잔액+당해연도 간접비수익), 지출액, 학교회계전출금, 기말잔액 모두(국가사업 및 기타사업) 2021 회계연도 보다 2022회계연도에 증가
 -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
 - (국가) 2021 및 2022 회계연도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47%, 당해연도 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75%임
 - (기타) 2021 및 2022 회계연도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38%, 당해연도 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79%임
 - (국가와 기타) 국가사업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이 기타사업 지출비율 보다 9% 높고, 당해연도 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도 국가사업 지출비율이 기타사업 지출비율보다 4% 낮게 나타남
 - 기말 잔액
 - (국가) 2021회계연도 5,741억, 2022회계연도 6,478억, 2022회계연도 기말 잔액이 2021회계연도 기말 잔액보다 737억 증가(12.8%)
 - (기타) 2021회계연도 2,556억, 2022회계연도 2,749억, 2022회계연도 기말 잔액이 2021회계연도 기말 잔액보다 193억 증가(7.6%)
 - (국가와 기타 합계) 2021회계연도 8,297억원, 2022 회계연도 9,227억, 2022회계연도 기말 잔액이 2021회계연도 기말 잔액보다 930억 증가(11.2%)

- 지출액 대비 잔액 비율

- (국가) 2021 및 2022 회계연도 간접비 지출액 대비 잔액비율은 평균 99.5%
- (기타) 2021 및 2022 회계연도 간접비 지출액 대비 잔액비율은 평균 164%
- (국가 및 기타) 기타사업 잔액비율이 국가사업 잔액비율보다 64.5 % 높게 나타나, 대학들은 국가사업 지출액을 증가시켜 잔액비율을 낮추고 기타사업 지출액은 감소시켜 잔액비율을 높이는 상태임

〈표 4-2〉 간접비지출내역서 항목별 평균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사업	기초 잔액 (A)	당해연 도 수익 (B)	총수익 (C) (A+B)	지출액 (D)	학교 회계 전출금 (E)	기말 잔액 (F)	총수익 대비		당해연도 수익 대비		지출액 대비 잔액비율 (F/D)
								지출비율 (D/C)	잔액비율 (F/C)	지출비율 (D/B)	잔액비율 (F/B)	
2021	국가	4,569	8,167	12,726	5,675	1,312	5,741	46	46	73	98	101
	기타	2,063	2,415	4,471	1,450	473	2,556	41	43	81	117	176
2022	국가	5,766	8,833	14,599	6,610	1,530	6,478	48	44	77	116	98
	기타	2,413	2,625	5,038	1,805	497	2,749	35	54	77	127	152

○ 연간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분석 결과

- 전체현황

- 총수익(기초잔액+당해연도 간접비수익), 지출액, 기말잔액(국가사업 및 기타사업) 이 2021 회계연도 보다 2022회계연도에 증가 하였고, 학교회계 전출금만 감소

-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

- (국가) 2021 및 2022 회계연도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48.5%, 당해연도 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73%임
- (기타) 2021 및 2022 회계연도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37.5%, 당해연도 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은 평균 65.5%임
- (국가와 기타) 국가사업 총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이 기타사업 지출비율 보다 11% 높고, 당해연도 수익 대비 간접비 지출비율도 국가사업 지출비율이 기타사업 지출비율보다 7.5% 높게 나타남

- 기말 잔액

- (국가) 2021회계연도 3,252억, 2022회계연도 3,652억, 2022회계연도 기말 잔액이 2021회계연도 기말 잔액보다 400억 증가(12.3%)

- (기타) 2021회계연도 1,483억, 2022회계연도 1,605억, 2022회계연도 기말 잔액이 2021회계연도 기말 잔액보다 122억 증가(8.2%)
- (국가와 기타 합계) 2021회계연도 4,735억원, 2022 회계연도 5,257억, 2022회계연도 기말 잔액이 2021회계연도 기말 잔액보다 522억 증가(11.0%)
- 지출액 대비 잔액 비율
 - (국가) 2021 및 2022 회계연도 간접비 지출액 대비 잔액 비율은 평균 84.5%
 - (기타) 2021 및 2022 회계연도 간접비 지출액 대비 잔액 비율은 평균 155.5%
 - (국가 및 기타) 기타사업 잔액비율이 국가사업 잔액 비율 보다 71 % 높게 나타나, 대학들은 국가사업 지출액을 증가시켜 잔액 비율을 낮추고 기타사업 지출액은 감소시켜 잔액 비율을 높이는 상태임

〈표 4-3〉 연간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간접비지출내역서 항목별 평균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사업	기초잔액(A)	당해연도수익(B)	총수익(C) (A+B)	지출액(D)	학교회계전출금(E)	기말잔액(F)	총수익 대비		당해연도 수익 대비		지출액 대비 잔액비율(F/D)
								지출비율(D/C)	잔액비율(F/C)	지출비율(D/B)	잔액비율(F/B)	
2021	국가	2,515	5,368	7,883	3,759	872	3,252	48	39	69	68	87
	기타	1,094	1,523	2,618	878	256	1,483	37	52	64	110	169
2022	국가	3,326	5,843	9,169	4,427	1,090	3,652	49	37	77	68	82
	기타	1,335	1,638	2,973	1,132	236	1,605	38	52	67	109	142

〈표 4-4〉 대학 간접비 집행 추이, 2012~2021

(단위: 억원,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국가 R&D 총 연구비		134,338	146,367	154,205	160,719	162,031	163,973	167,712	174,484	198,657	225,839
대학 총 연구비(a)		32,177	34,505	35,242	36,474	37,001	37,919	39,380	44,163	50,153	56,544
간접비	대학 간접비(b)=b/a	4,372 (13.6)	4,728 (13.7)	4,837 (13.7)	5,158 (14.1)	5,149 (13.9)	5,443 (14.4)	5,680 (14.4)	6,333 (14.3)	7,061 (14.1)	7,834 (13.9)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18.23%	18.18%	좌동	25.89%	26.14%	24.31%	좌동	24.73%	좌동	25.52

* 출처 : '12~'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인문 및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사업 대상, 정부연구비 및 대응자금 중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물건비는 제외)

제 5 장

결 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의 사전 확정 및 내용 명확화 필요
 - 대학 및 출연(연)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당해연도에 산출기준이나 작성지침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2년전에 대학 또는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가 필요
 - 사전에 알려주시 않고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발생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예시)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비목별 인정범위를 명확히 제시, ②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③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이 되는 대학의 연구비 실적을 현행 연 10억 원보다 상향조정 등
- 간접비고시비율 신청 및 산출과정의 디지털화
 - (문제점) 간접비고시비율 신청 및 산출을 수작업으로 진행함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관련 데이터 확보 애로
 - (개선) 간접비고시비율 신청 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및 유용한 정책자료 제공 등을 위해 간접비 업무 관련 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

붙임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Q&A (온라인 설명회)

(’23.5.16, KISTEP 제도혁신센터)

질의사항	답변
실사비용의 실사가 뭔가요?	○ 간접비실사비용이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한 간접비 비율을 실사검증단에서 검증하여 확인한 비율로서, 간접비고시비용 산출기준상의 상한기준(대학) 및 가·감률(공통)을 적용하기 전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공된 템플릿(붙임폴더)에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각각 제출인거죠?	○ 2021 회계연도와 2022 회계연도 자료를 각각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K2Base-대학별폴더-(하위폴더) 2021,2022회계연도에 각각 제출)
대학명 옆에 총장 직인 날인인가요?	○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은 대학 교비(학교)회계와 산단의 산단회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대학총장 직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받아야하는 자료관련하여, 평가원에서 간접비 제출관련 공문 배부 예정은 없으신지요	○ KISTEP에서 공문은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공문 발송 방식에서 21년 혁신법 시행으로 과기정통부 공고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12조). 과기정통부 공식 공고문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협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템플릿만 내면되는지 증빙들을 다내야하는지 궁금해요	○ 모든 템플릿은 필수 제출이고, 각 템플릿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시자료제출에 해당하는 연구비수혜실적과 장학금수혜실적 모두 8월 공시인데,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따로 요청해서 자료받아 작성하라는 것이지요?? 실제 8월에 공시되는것과 자료가 상이할 수도 있겠네요....	○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향후 공시된 정보공시 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공시를 반영하여 간접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공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금년도 실사 시에는 정보공시 내용 변경에 따라 간접비 제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이 공시가 평가기간 이후라면 연구비수혜실적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값이 달라지게 되는건데 그건 N차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값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건데	
정보공시가 6월~8월에 이뤄지는 자료의 경우, 마감 전 자료로 입력하면 되나요?	
책자 혹은 지침서를 따로 제공해 주시나요?	
	○ 책자를 별도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k2base 공지사항에 첨부된 자료들을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답변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인력현황은 정보공시항목에서 삭제되었는데요.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지침으로 수정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로 수정반영 예정입니다.
R&D 계수에 LINC+ 사업이 있는데 LINC3.0 기술혁신선도형도 포함인건가요?	○ LINC 3.0사업이 2021회계년도 또는 2022 회계연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R&D계수 적용사업이며, LINC3.0 사업은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사업은 모두 포함됩니다.
R&D계수 적용사업 종류에서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이 LINC3.0사업을 얘기하는게 맞을까요?	
R&D 계수를 조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접비수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는 0%로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0%로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 R&D 계수적용 사업중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은 교육수익으로 분류됩니다.
학교법인회계는 제외죠?	○ 산학협력단의 산단회계는 국립·사립대학 구분없이 간접비고시비율산출 대상에 포함되고, 학교회계는 국·공립대는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가 인정되며, 학교법인회계의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학생산재보험료는 가입주체가 산학협력단이 아니고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템플릿 양식 중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서 간접비 사업비에 학생산재보험료 계정과목이 표시되어있는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는 학생산재보험료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템플릿 작성시 따로 계산해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학생산재보험료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직원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센터(학교소속기관) 직원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으로 계상 할 수 있을까요?	
연구는 아니고 공통이 해당될거 같은데요?	
저희 대학은 학생산재보험료를 교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학생산재보험료 항목에 작성해도 괜찮을지요?	
교내장학금 차감할때 대학+대학원 포함인가요?	○ 대학과 대학원 모두 포함입니다.

질의사항	답변
교내장학금 차감 시 근로장학금 제외로 되어 있으니 근로장학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 차감되는 교내장학금에서 근로장학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단 포함여부도 알려주세요. 연구소와 동일하게 처리한 부분이 빠진건지요?	○ 국책사업단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통지원부문 또는 교육지원부문에 해당합니다.
시설지원실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 책정한 공공요금을 매달 공문으로 주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 건물별 계량은 필수사항이므로, 건물별 계량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인정기준”에 따라서 집행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수치만 내는건가요? 증빙도 다내는건가요?	○ 모든 텀플릿은 필수 제출이고, 각 텀플릿에서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공요금을 산단이 아닌 대학에서 전부 지출하고 있을 경우도 인정되는건가요?	○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한 경우에만 연구지원부문으로 인정되며, 그 외에는 공통지원부문으로 인정됩니다.
공공요금 집행이 없는 경우 해당 서식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 공공요금 집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만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로 인정 가능한건가요??	○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만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로 인정됩니다.
조교는 다 제외 아닌가요? 올해부터	○ 사립대학 조교인건비는 제외입니다. 2021년 심의사례 이후 개선조치 사항에 따라 2023년 간접비 비율 산출시에는 조교인건비(학교조교, 연구조교 모두 포함)는 모두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이 아니고 겸직(산학협력단 업무 및 교비회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비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10억 원 미만이면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심의사례에 나와 있는거 처럼 단과대 학사지원팀 조교는 인정인 거죠?	
학교조교 말고 연구조교로 발령받은 것도 제외인가요?	
공통지원부문 행정부서와 학과가 아닌 단과대학에서 연구 행정하는 조교인건비는 가능한것 아닌가요	
조교인건비는 연구/공통/교육 부서별이 아닌 무조건 불인정이란 말씀이실까요 ㅎㅎ 신분으로 보시는건가요?	
아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건 조교인건비도 인정으로 보이네요..	

질의사항	답변
조건을 충족하는(일정액 이상 연구수행을 한) 단과대학행정실 소속 조교 인건비는 인정 아닌가요?	
연구지원부서에서 팀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조교도 연구지원부서로 보지않고 아예 불인정하는건가요?	
학교인건비가 교육지원부서에 해당된다면 9-1에서 세부내역없이 총액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 교육지원부서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경비용역비등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는 없나요?	○ 전체 대학의 경비용역비 중 일부(배분된 금액)를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한 경우 연구지원부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인쇄비 등 과제신청경비를 연구활동지원금-실험실운영경비 수수료로 인정할까요?	○ 과제신청을 위한 인쇄비는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회계에서 지원하던 실험실운영경비를 간접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정인가요? 해당 예산을 대학회계에서 간접비회계로 가져와서 간접비회계에서 집행하고자합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에 반영된 경우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에 해당하면 간접비로 인정됩니다.
● 별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제공되나요?	○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책자의 [붙임 3] 을 참조해 주세요
● 간접비지출내역서의 학교회계전출금은 자산전출을 포함하는 건가요? 현금전출만 기재하나요?	○ 현금으로 전출된 경우만 포함되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간접비지출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주시는걸 지출건별로 다 구분할 지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게 맞는지요?	○ 간접비지출 관련해서 지출 건별로 다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간접비 지출내역서는 운영계산서 기반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간접비지출내역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 대면실사는 모든 대학이 다 나오나요?	○ 1차 서류검토 후 대면 검증이 필요한 대학에 대하여 대면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대면검증 대학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대면검정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또한 샘플링 등을 통해 대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개선 권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23년 이후 개선 권고 내역을 별도로 관리되나요?	○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해당 대학을 별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218~229]

(‘23.5.17, KISTEP 제도혁신센터)

질의사항	답변
대학알리미의 해당 공시내용(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중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은 2022년 삭제항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장 최근의 공시는 2021년 6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해당 공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대)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5번 파일 운영계산서 작성시, 전기(2020회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 학생산재보험료는 기관공통비용 내 세목으로 관리되어 결산서상 기관공통비용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준템플릿 5번, 11번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목포해양대학교)	○ 전기의 경우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재료비에,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학생산재보험료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직원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가감률 예시를 보면 벌점 누계 20점 초과 시 감률 3%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올려주신 케이스를 보면 5%가 감률된 것으로 계산된 것 같아 예시의 산술식이 잘못된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경희대)	○ 누계 20점 초과 시 감률 3%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산술식에는 5%가 아닌 3%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대학알리미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간접비템플릿 8-4] 해당자료는 대학알리미 상에는 2022년 삭제항목으로 되어있으나, 간접비고시비율 제출자료 템플릿 8-4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기준 자료는 알리미 공시 대상이 아닌데, 어떤 자료로 8-4 템플릿을 작성해야할까요? 2> 대학알리미 12-다 장학금 수혜현황[간접비템플릿 8-3] 작성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현황은 알리미 공시 일정은 8월이며, 해당 장학금 수혜현황 작성에 대한 지침이 7월 중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6월 30일은 장학금수혜현황 작성 지침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6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8-3템플릿은 최종 알리미 내역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내장학금 계산시 반영되는 “알리미상 근로장학금” 역시 6월 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화여대)	○ 템플릿 8-4번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향후 공시된 정보공시 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공시를 반영하여 간접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공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만약 알리미 공시 일정으로 인하여 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현황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실제 교비회계에서 회계처리된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대학알리미 12-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1년까지만 공시되는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8-5.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관련하여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 공시(2022.4.1 기준/ 2022.10 공시), 2023 공시(2023.4.1 기준/ 2023.10 공시)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한국공학대학교)	○ 2022회계연도는 2022.3.1.일부터 23.2.28일까지이므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기준 시점(2022.4.1.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2022.10월 공시 자료를 이용합니다.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간편법) 대학회계 인원에 대한 연구지원과 공통지원 인력 인건비 산출 시,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 시, 급여 총액은 알 수 있으나, 성과급과 급여를 구분하여 자료를 추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자료 작성 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금액은 0원으로 기입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총액을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엑셀서식] 급여/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 인건비 계 2. 연말정산자료와 회계연도(2021,2022)의 자료를 대상자 별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예) 대학회계 예산 지급 : 대학 도서관 대학회계 직원 10명 - 연말정산자료 이용하여, 급여 내역 입력 대학회계 예산 지급 : 정보전산원 자체 채용 계약 직원 10명 - 2021년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 기간에 맞게 급여 내역 입력	1.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먼저 기재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차감한 나머지 급여 총액을 급여에 기재합니다. 2. 간편법을 적용하든 실제 회계자료를 이용하든 한 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방법을 대상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218~233]

(‘23.5.31, KISTEP 제도혁신센터)

질의사항	답변
대학알리미의 해당 공시내용(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중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은 2022년 삭제항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장 최근의 공시는 2021년 6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해당 공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대)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5번 파일 운영계산서 작성시, 전기(2020회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 학생산재보험료는 기관공통비용 내 세목으로 관리되어 결산서상 기관공통비용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준템플릿 5번, 11번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목포해양대학교)	○ 전기의 경우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재료비에,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학생산재보험료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직원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가감률 예시를 보면 별점 누계 20점 초과 시 감률 3%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올려주신 케이스를 보면 5%가 감률된 것으로 계산된 것 같아 예시의 산술식이 잘못된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경희대)	○ 누계 20점 초과 시 감률 3%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산술식에는 5%가 아닌 3%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대학알리미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간접비템플릿 8-4] 해당자료는 대학알리미 상에는 2022년 삭제항목으로 되어있으나, 간접비고시비율 제출자료 템플릿 8-4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기준 자료는 알리미 공시 대상이 아닌데, 어떤 자료로 8-4 템플릿을 작성해야할까요? 2) 대학알리미 12-다 장학금 수혜현황[간접비템플릿 8-3] 작성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현황은 알리미 공시 일정은 8월이며, 해당 장학금 수혜현황 작성에 대한 지침이 7월 중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6월 30일은 장학금수혜현황 작성 지침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6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8-3템플릿은 최종 알리미 내역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내장학금 계산시 반영되는 “알리미상 근로장학금” 역시 6월 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화여대)	○ 템플릿 8-4번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향후 공시된 정보공시 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공시를 반영하여 간접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공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만약 알리미 공시 일정으로 인하여 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현황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실제 교비회계에서 회계처리된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대학알리미 12-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1년까지만 공시되는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8-5.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관련하여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 공시(2022.4.1 기준/ 2022.10 공시), 2023 공시(2023.4.1 기준/ 2023.10 공시)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한국공학대학교)	○ 2022회계연도는 2022.3.1.일부터 23.2.28일까지이므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기준 시점(2022.4.1.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2022.10월 공시 자료를 이용합니다.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간편법) 대학회계 인원에 대한 연구지원과 공통지원 인력 인건비 산출 시,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 시, 급여 총액은 알 수 있으나, 성과급과 급여를 구분하여 자료를 추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자료 작성 시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등 금액은 0원으로 기입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총액을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엑셀서식] 급여/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 /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등 / 인건비 계 2. 연말정산자료와 회계연도(2021,2022)의 자료를 대상자 별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예) 대학회계 예산 지급 : 대학 도서관 대학회계 직원 10명 - 연말정산자료 이용하여, 급여 내역 입력 대학회계 예산 지급 : 정보전산원 자체 채용 계약 직원 10명 - 2021년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 기간에 맞게 급여 내역 입력	1.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먼저 기재하여,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차감한 나머지 급여 총액을 급여에 기재합니다. 2. 간편법을 적용하든 실제 회계자료를 이용하든 한 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방법을 대상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조교인건비 제외 관련 건]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온라인 설명회 질의사항)에 2023년 간접비 비율 산출시 사립대학의 조교인건비는 산출 기준액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만, 본 대학 조교는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조교인건비' 계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개념(연구조교, 학과조교 등)이 아닌 '일반직원'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일반직원과 동일한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 등 혜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발령) 실질적으로 직원과 동일하게 산학협력단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으로서의 '조교'의 인건비 또한 해당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2023년도부터 이러한 명칭상의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인원의 직종을 전원 '직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 사립대학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 조교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는 간접비 비율 산출 시 모두 제외됩니다. 2021년 심의사례 이후 개선조치 사항에 따라 2023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조교인건비(학교조교, 연구조교 모두 포함)는 모두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공공요금 산출내역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운영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작성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계산서는 실제 출금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에는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운영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과금이 반영되게 되는데, 12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도 간접비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세대)	○ 공공요금 인정기준에서는 월별/분기별로 청구·집행된 공공요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금흐름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사항	답변
과기부 공고 [붙임2]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해설서에는 아래의 양식이 제공된다고 표기되었으나, 실제 배부된 엑셀 템플릿에는 해당양식이 없습니다. 〈아래〉 52p) 6.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1) 10-8. 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 자료형식(엑셀)/필수제출/템플릿제공 2)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자료형식(엑셀)/필수제출/템플릿제공○ >> 위 양식이, 엑셀로 제공된 템플릿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백석대)	○ 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양식은 공지사항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기술창업출연출자금은 간접비 산출에 미적용되므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v1.5 (6)- 230529.xls 파일 참고)
0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템플릿 검토 요청드립니다. 첫번째 시트 2호서식 2-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교비) 회계 연구진흥경비 부분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합계 부분에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서일대)	○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행 위에 행을 하나 삽입하여, 그 행의 계정과목명을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으로 입력하고, 자산화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행은 계정과목명을 "소계"로 변경해 주십시오 (국립대학 템플릿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수정하셔도 무방하며, 공지사항에 업로드 하였으니 해당 수정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II.비유동자산-2.유형자산 과목 중 감가상가누계액은 전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합계를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숫자를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3년 3월 1일 이후로 한국복지대학교와 통합되었습니다. 2022년 결산까지는 따로 진행하며, 사학진흥재단에도 22년도 결산까지 따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간접비 산출에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따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경국립대)	○ 한국복지대의 경우,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신청으로 인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이 불가하며 기존 한경대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간접비 고시비율 확정 후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한경대의 결산자료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받고, 2025년부터는 통합된 한경국립대의 결산자료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218~253]

(’23.6.19, KISTEP 제도혁신센터)

질의사항	답변
대학알리미의 해당 공시내용(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중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은 2022년 삭제항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장 최근의 공시는 2021년 6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해당 공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대)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5번 파일 운영계산서 작성시, 전기(2020회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 학생산재보험료는 기관공통비용 내 세목으로 관리되어 결산서상 기관공통비용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준템플릿 5번, 11번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목포해양대학교)	○ 전기의 경우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재료비에,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학생산재보험료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직원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04.학교회계 운영계산서 v1.5" 관련입니다. 1.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해설서 : 4234 기관장 업무추진비, 4235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4236 기타 업무추진비 2. 간접비 산출 엑셀 작성양식 : 4234 업무추진비 회계처리 규칙의 계정과목과 간접비 산출의 계정과목이 서로 상이하여 작성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한동대)	○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해설서상 “4234 기관장 업무추진비, 4235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4236 기타 업무추진비”는 모두 합산하여 “4234 업무추진비”에 입력해 주십시오.
본 대학에서는 본교(서울) 과 제2캠퍼스(천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계산서는 하나로 만들어 집니다. ※ 캠퍼스별로 작성하지 않음 이 경우 04.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v1.5 작성 시 4-2. 교비회계 운영계산서(통합)만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명대)	○ 운영계산서를 캠퍼스별로 작성하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경우에는 4-2. 교비회계 운영계산서(통합)만 작성하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첨부해주신 가감률 예시를 보면 별점 누계 20점 초과 시 감률 3%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올려주신 케이스를 보면 5%가 감률된 것으로 계산된 것 같아 예시의 산술식이 잘못된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경희대)	○ 누계 20점 초과 시 감률 3%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산술식에는 5%가 아닌 3%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대학알리미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간접비템플릿 8-4] 해당자료는 대학알리미 상에는 2022년 삭제항목으로 되어있으나, 간접비고시비율 제출자료 템플릿 8-4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기준 자료는 알리미 공시 대상이 아닌데, 어떤 자료로 8-4 템플릿을 작성해야할까요? 2) 대학알리미 12-다 장학금 수혜현황[간접비템플릿 8-3] 작성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현황은 알리미 공시 일정은 8월이며, 해당 장학금 수혜현황 작성에 대한 지침이 7월 중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6월 30일은 장학금수혜현황 작성 지침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6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8-3템플릿은 최종 알리미 내역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내장학금 계산시 반영되는 “알리미상 근로장학금” 역시 6월 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이화여대)	○ 템플릿 8-4번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향후 공시된 정보공시 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공시를 반영하여 간접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공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만약 알리미 공시 일정으로 인하여 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현황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실제 교비회계에서 회계처리된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해 주십시오.
공시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목록에도 다른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공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8월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간접비 원가산출은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원가산출에 필요한 자료인 정보공시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회계년도 원가산출 자료를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지사향의 질의응답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6월 30일에 제출하고 자료가 상이하면 확정된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원가산출 자료를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답변사항으로 정보공시 내용 변경에 따라 제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으면, 2022회계년도 원가산출 자료는 정보공시 확정 이후 제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시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기준으로 2022회계년도 원가산출 자료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고려대)	○ 정보공시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2022회계년도 원가산출 자료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공시 이후까지 전체 원가산출 자료의 검토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가피한 사유(미제출 사유서 기관장 날인 후 제출)로 인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의 경우 향후 검증 과정(7월 중순 예상)에서 추가 제출해도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대학알리미 12-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1년까지만 공시되는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8-5. 교사(敎舍)시설 확보 현황 관련하여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 공시(2022.4.1 기준/ 2022.10 공시), 2023 공시(2023.4.1 기준/ 2023.10 공시)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한국공학대학교)	○ 2022회계연도는 2022.3.1.일부터 23.2.28일까지이므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기준 시점(2022.4.1.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2022.10월 공시 자료를 이용합니다.
8-3. 장학금 수혜혜택 부분을 작성하려고 보니, 1. 템플릿에는 교내(교포) 부분에 "재난 장학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보공시에는 "재난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재난장학금"을 "기타"항목으로 넣어서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수정 템플릿 배포를 해주실지 여쭙고자 합니다~!(단국대)	○ "재난 장학금"은 "기타" 항목에 합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올려주신 Q & A 자료 내 장학금 수혜현황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알리미 공시 일정으로 인하여 장학금 수혜현황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실제 교비회계에서 회계처리된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 주셨던데요, 장학금 수혜현황을 교비회계에서 회계처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양식은 대학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기준에 상관없이 대학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교내자체 장학금 양식 첨부해서 올립니다. 학과별/지원별통계분류(장학금구분)로 장학금 내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오공과대)	○ 산출양식에 반영되는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교비회계에서 회계처리한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장학금 수혜현황양식은 대학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금번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하여 관련 자료 취합 및 검토 수행 중입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업무 수행 간 기획예산팀, 인사총무팀, 학생지원팀, 산학기획팀, 시설팀, 각 대학원 행정팀(10개가 넘는) 등 수많은 유관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 공지해주신 것처럼 금년도 간접비율 산출일정이 앞당겨져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21회계연도와는 달리, 22회계연도 간접비율 산출은 아직 공시되지 않은 항목들의 원 자료 취합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보공시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2022회계연도 원가산출 자료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공시 이후까지 전체 원가산출 자료의 검토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가피한 사유(미제출 사유서 기관장 날인 후 제출)로 인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의 경우 향후 검증 과정(7월 중순 예상)에서 추가 제출해도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답변
22회계 연구비 수혜실적, 장학금 수혜실적 등 각 공시항목별 담당자들은 각 단과대학/대학원별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공시기한(6월/8월)을 염두에 두고 6월 현재 기초자료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6월말 간접비 고시비율 제출을 위하여 각 항목 담당자에게 현재기준 최종 검증이 되지 않은 무의미한 숫자를 무리하게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항목별 담당자 1인만 노력한다고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유관 부서에서 기초숫자를 다 받아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통계자료인 만큼 항목별로 최종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계된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작업 소요되는 최소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초 정해진 공시기한이 있는 거겠지요. 다시 말해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담당자가 산출일정을 맞추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숫자를 받아 22회계연도 간접비율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산출된 간접비율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연구비 수혜실적(국가R&D 실적 판단) 값이 변동되면 공통지원부문/교육부문 인건비 "구분"이 아예 달라지게 되어,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수치가 모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정부공시자료가 나오면 공시자료 활용이 원칙이므로 간접비율을 반드시 재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강대)	
●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간편법) 대학회계 인원에 대한 연구지원과 공통지원 인력 인건비 산출 시,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 시, 급여 총액은 알 수 있으나, 성과급과 급여를 구분하여 자료를 추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자료 작성 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금액은 0원으로 기입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총액을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엑셀서식] 급여/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 인건비 계 2. 연말정산자료와 회계연도(2021,2022)의 자료를 대상자 별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예) 대학회계 예산 지급 : 대학 도서관 대학회계 직원 10명 - 연말정산자료 이용하여, 급여 내역 입력 대학회계 예산 지급 : 정보전산원 자체 채용 계약 직원 10명 - 2021년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 기간에 맞게 급여 내역 입력	1.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먼저 기재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차감한 나머지 급여 총액을 급여에 기재합니다. 2. 간편법을 적용하든 실제 회계자료를 이용하든 한 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방법을 대상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조교인건비 제외 관련 건]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Q&A(온라인 설명회 질의사항)에 2023년 간접비 비율 산출시 사립대학의 조교인건비는 산출 기준액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만, 본 대학 조교는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조교인건비' 계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개념(연구조교, 학과조교 등)이 아닌 '일반직원'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일반직원과 동일한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 등 혜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발령) 실질적으로 직원과 동일하게 산학협력단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으로서의 '조교'의 인건비 또한 해당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2023년도부터 이러한 명칭상의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인원의 직종을 전원 '직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 사립대학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 조교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는 간접비 비율 산출 시 모두 제외됩니다. 2021년 심의사례 이후 개선조치 사항에 따라 2023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조교인건비(학교조교, 연구조교 모두 포함)는 모두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9-1.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 작성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내역 작성 시 연구지원, 공통지원, 교육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되는데요,, 연구지원,공통지원 부문은 상세하게 각 부서 및 직원별로 작성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혹시 교육지원 부문도 부서별,사람별로 급여 등이 작성되어야 할까요? 교육지원부분은 총액으로 작성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경일대)	○ 교육지원부분은 총액으로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배포하신 해설서 심의사례에 따르면 1. 인건비 관련 - 사립대학 조교인건비 (단과대학 행정실 조교인건비는 인정하되 학과사무실 조교인건비는 불인정)이라 나와있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조교들의 인건비를 4125임시직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단과대학 행정실 조교인건비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상명대) 사립대학의 경우 조교인건비는 모두 제외됨을 유의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인건비 분류기준 상 대학알리미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에 반영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되어있는데 본교는 산학협력단 인력에 조교(교비로 집행되는 산학연구팀 소속)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명대)	○ 조교들의 인건비를 4125임시직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조교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대상입니다. ○ 산학협력단 인력에 조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조교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대상입니다.

질의사항	답변
15.공공요금 산출내역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운영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작성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운영계산서는 실제 출금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에는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운영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과금이 반영되게 되는데, 12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도 간접비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세대)	○ 공공요금 인정기준에서는 월별/분기별로 청구·집행된 공공요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금흐름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기부 공고 [붙임2]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해설서에는 아래의 양식이 제공된다고 표기되었으나, 실제 배부된 엑셀 템플릿에는 해당양식이 없습니다. ● <아래> 52p) 6.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1) 10-8. 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 자료형식(엑셀)/필수제출/템플릿제공 2)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자료형식(엑셀)/필수제출/템플릿제공 >> 위 양식이, 엑셀로 제공된 템플릿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백석대)	○ 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양식은 공지사항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기술창업출연출자금은 간접비 산출에 미적용되므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v1.5 (6)- 230529.xls 파일 참고)
0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템플릿 검토 요청드립니다. 첫번째 시트 2호서식 2-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교비) 회계 연구진흥경비 부분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합계 부분에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서일대)	○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행 위에 행을 하나 삽입하여, 그 행의 계정과목명을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으로 입력하고, 자산화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행은 계정과목명을 "소계"로 변경해 주십시오 (국립대학 템플릿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수정하셔도 무방하며, 공지사항에 업로드 하였으니 해당 수정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II. 비유동자산-2.유형자산 과목 중 감가상가누계액은 전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합계를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숫자를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저희가 2023년 3월 1일 이후로 한국복지대학교와 통합되었습니다. 2022년 결산까지는 따로 진행하며, 사학진흥재단에도 22년도 결산까지 따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간접비 산출에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따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경국립대)	○ 한국복지대의 경우,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신청으로 인해 간접비고 시비율 산출이 불가하며 기존 한경대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간접비 고시비율 확정 후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한경대의 결산자료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받고, 2025년부터는 통합된 한경국립대의 결산자료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 회계팀,구매팀,시설팀,중앙도서관,중앙전산권,중앙기기센터 시설팀 = 대학의 시설 유지보수 등을 관리(관재업무 포함) * 시설관리업무는 대학회계에서 용역비로 지출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하여 현재 시설팀 미화반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시직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되나 직고용한 경우 대학 내 시설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공통지원부문에 인정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라대)	○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운영직 인건비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14.5.(사립)공통관리운영비 총괄 시트 관련입니다. 1. 작성시 유의사항을 보면 '운영계산서결산서금액(A)'은 교비회계 합계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을 보면 [14-6.(사립)교비회계운영계산서의 E열(등록금회계)]로 걸려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지침서에 따르면 [I열(교비회계 합계)]로 수식이 걸려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D25와 E25의 소계(1) 부분에 수식을 보면 합계에 복리후생비가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런데 F25에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합계입니다. 지침서에도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수식을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가톨릭관동대)	○ E열(등록금회계)]이 아니라 [I열(교비회계 합계)]로 수식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D25와 E25의 소계(1) 부분에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R&D계수 적용사업 중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으로 국책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구수익과 교육수익 계상기준을 50:50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책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연구원가에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질의 응답에 따르면 국책사업단 근무직원의 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또는 교육지원부문에 해당된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셔서 질의드립니다. 질문)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한 직원인건비는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되는지요?(건국대)	○ 국책사업단 인건비는 간접비 작성지침상의 인건비 인정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업무별 인력현황 반영 여부, 대학 소속직원의 산학협력단 파견 여부 등) 한편, 문의해 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은 R&D계수 적용사업으로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사업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근무직원 인건비는 간접비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Q&A(온라인 설명회 질의사항) 중 8페이지 지출내역 - 간접비 지출내역서는 운영계산서 기반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간접비지출내역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는 [별지 제4호 7서식] 간접비 지출내역서의 경우 '기타지원비' 계정과목이 있고,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을 위한 템플릿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의 경우 기타 지원비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간접비지출내역서와 동일해야한다고 하는데 템플릿의 양식이 달라 기타지원비 금액을 제외하면 결국 기말 재원잔액 차이는 물론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내역서 또한 차이나게 됩니다. 둘 중 어떤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라대)	○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간접비지출내역서에 “기타지원비” 금액이 있는 경우, 템플릿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에도 동일하게 “기타지원비”를 추가해 주십시오.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자료에서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항목 중 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의 정의를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대학마다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주회사와 학교 기업에 출자하면 모두 간접비산출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요?(한밭대)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에 출연·출자한 금액의 의미합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는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별 구분 등에서 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지원체계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템플릿 8-4번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자료에는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겸직인원들이 있어 0.5명, 0.3명과 같이 인원을 나눠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겸직인원의 경우 소수점으로 나눠 입력하면 되는지, 정수로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호서대)	○ 겸직인원의 경우 실태조사 자료와 동일하게 소수점으로 나눠 입력하십시오.
1-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 연구진흥경비에서 학교회계연구진흥경비쪽 문의 드립니다. 학교회계에서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한하여 인정하는 부분에서 지출한 금액을 작성하는데...대학회계에서 사업구분에따른 수입대체, 국가/지자체 지원금, 학사활동사업비 중 일반재원(학사활동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인정되는거 맞죠?? 12-1 (템플릿) 비교에 국립의 경우 국비, 수입대체경비는 포함 불가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일반재원(학술활동사업비)로 인정받는다면... 14-1.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조정금액 내역 (템플릿)에서 불인정금액으로 제외 해야 하는거죠?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물건비에 해당되는 목일 경우... 이중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니까.... 만약...연구실안전관리비 경우 물건비 목에 해당되어 이중이니 불인정에 넣어야 하는거 같은데.. 논문게재료나 학술활동지원비는 해당 목이 아니니...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거예요??	○ 국립대학의 경우 「국비」 또는 「수입대체경비」 등의 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에 포함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재원 구분 없이 인정합니다. ○ 또한 연구진흥경비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조정금액 내역에서는 불인정금액으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	답변
(우리학교의 경우 논문게재료나 학술활동지원비가 자체수입-일반재원-산학연활동지원-학술연구활동지원/ 목그룹이 이전지출, 목이 연구지원대응사업비 또는 자체수입-일반재원-인적자원운용-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 목그룹이 물건비, 목이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입니다.) (순천대)	
사립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2호서식에서 2-7 연간연구비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침서상에는 (인정항목) 대학교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 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학교회계-연구기부금 연구비 금액은 연구기부금 수입을 기입 2. 운영계산서상 교비회계 연구비(4310) 총액을 기입 3. 학교회계의 연구기부금이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지출된 금액을 기입 위의 3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협성대)	○ 학교회계 운영계산서상 5223연구기부금 금액을 기입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와 표준템플릿 04.학교회계 운영계산서 v1.5와 항목의 달라 문의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장 업무 추진비,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및 기타 업무 추진비를 더한 값을 넣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템플릿을 제공해 주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상명대)	○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해설서상 “4234 기관장 업무추진비, 4235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4236 기타 업무추진비”는 모두 합산하여 “4234 업무추진비”에 입력해 주십시오.
[R&D계수 적용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련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 28조 제2항(간접비 계상 불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3항(간접비 계상 불가)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서(41페이지) (R&D계수 적용사업 예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0.5),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0.5)*, 대학혁신지원사업(0.5),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0.5),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사업(0.25), 마이스터대 지원사업(0.2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_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 실제로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사업은 0%를 적용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 괄호는 사업별 R&D계수이나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의 경우 0%로 적용됨 (아주대)	
8-1 연구비수혜실적, 1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8-1 연구비수혜실적 - (부가가치세) 대학정보공시에 올라가는 연구비수혜실적이 원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 2021년도 일부 과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올라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정보공시에 올라가있는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용역과제) 대학정보공시 연구비수혜실적과 연계된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의 지침에 용역과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2021년도 연구과제 중 용역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정보공시에 올라가 있는대로 용역과제를 포함하여 기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전임교원 학과변경) 2022년도에 새로운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임교원의 학과가 2022.8.8.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도를 기입할 때, 변경된 전임교원의 학과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 (전표번호) 템플릿에 나와있는 전표번호는 시스템 내 문서번호를 써야하는건지 결의번호를 써야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 대학정보공시에 올라가 있는 금액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다만 용역과제는 제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과는 정보공시에 있는 학과와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고, 아래 부분에 변경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해 주십시오 ○ 전표번호는 시스템상에서 해당 전표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255~270)

(‘23.6.19, KISTEP 제도혁신센터)

질의사항	답변
08. 정보공시내용 작성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8-1. 연구비수혜실적 2022년 8월 공시되는 연구비수혜실적의 경우 아직 공시되기전으로 담당자에게 기초자료를 전달받아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그중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자동으로 산출되는 값이라고 하는데, 기본템플릿 작성을 위해 각각 현재시점에서 학과별 교원별로 계산을 해서 넣어야 하나요? 2. 8-2. 부설연구소 현황 2022년 8월 공시되는 부설연구소 현황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연구소별 전임유급연구원 및 학술행사 개최건수는 현재시점에서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순천대)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학과별 교원별로 계산해서 넣어주십시오. ○ 정보공시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구소별 전임유급연구원 및 학술행사 개최건수가 현재시점에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 시점에서 최대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후 최종 정보공시 자료로 인하여 간접비 실사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기관공통비용 인정여부 판단 요청 2021회계년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중 기관 공통 비용으로 일반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 개발용역비 1억6천만원 상당액을 처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인정여부의 판단 요청드립니다.(을지대)	○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비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어 간접비 실사시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학협력단에서 학교 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액 성격의 금액은 불인정항목입니다.
학교시설사용료 인정여부 학교시설사용료를 간접비 재원에서 지출하지만, 결산서 운영계산서 상 회계 계정과목은 산학협력비)학교시설사용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에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어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목포해양대)	○ 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비는 간접비실사비율 계산시 간접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는 작성지침에서 명시한 항목만 인정됩니다. 한편, 결산 오류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산출지침서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답변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 여부 간접비를 국가R&D, 기타사업으로 별도 계정(통장)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을 국가R&D 간접비 재원이 아닌, 기타사업 간접비 재원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목포해양대)	○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기타사업 간접비 재원으로만 전출한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모두 0원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작성시 운영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금액 차이 처리 방법 문의 템플릿 11번은 결산서 운영계산서 상의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산서의 금액은 당기 카드미지급금은 제외하고, 전기 카드미지급금은 포함된 금액인데, 실제 당기에 현금 지출된 내역과 검증금액(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운영계산서가 아닌 현금흐름표 상의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목포해양대)	○ 운영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연구활동지원금 인정 여부 설명회 때 연구활동지원금 인정항목을 ①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 구입비 ② 실험실 운영 지원비 ③ 학술대회 지원비 ④ 논문게재료 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인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대학은 연구활동지원금에서 국가연구개발유치지원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 대형사업 유치 TFT 및 신규과제 유치를 위한 활동(용역, 인쇄비, 여비, 회의장 대관 수수료 등)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불인정 대상인지요? 불인정된다면, 계정과목을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사용해서인지, 간접비 자체에서 연구자들의 과제유치지원비를 어떤 항목으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목포해양대)	○ 국가연구개발유치지원비는 현행 간접비 산출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불인정 인가요? 1.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불인정 인가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만약 인정된다면 (표준 템플릿)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10-1, 10-5) 02. 사립대학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2-1-2) (상명대)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현재 작성지침에 인정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자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원과 동일하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 등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불인정 대상이므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장학금과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불인정 대상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발송여부, 간접비산출신청서 (2021,2022년도) 각각 작성 여부 문의 1) 제출 시 공문을 별도로 발송해야 하나요? 2) 간접비산출신청서(서식1)는 서식 하나만 작성하고, 동일한 날인(스캔)본을 각각 2021,2022년도 폴더에 업로드 해도 되나요? (백석대)	○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실 필요는 없으며 간접비 산출신청서는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간접비산출신청서는 서식 하나만 작성하고, 동일한 날인(스캔)본을 각각 2021,2022년도 폴더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12.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내역 문의 드립니다. 작성지침에 의하면 [4311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비용은 연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4311 연구비] 계정에서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의 비용이 지출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불인정되는 것인가요?(정지숙)	○ [4311 연구비] 계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연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연구진흥경비에서 불인정 대상입니다.
2023년 자료 제출 연장 요청 2022년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 자료인 전임교원 인적 정보, 연구비 수혜실적, 부설연구소 현황 등 조사항목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정보공시 기초자료) 실 집계 완료를 6월 30일로 안내하였습니다.	○ 정보공시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부설연구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후 최종 정보공시 자료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답변
저희는 간접비 재원으로 기관공통경비에서 학생 단기알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의 인력지원비에 지원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계상 시 공통 불인정항목에 지원인력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알바 인건비 또한 지원인력 인건비로 보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계상 시 불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인제대)	○ 기관공통경비에 반영된 인건비는 불인정 대상이며 인건비가 아닌 경우에는 산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인건비로의 회계처리 여부는 해당 인력의 4대보험 가입여부(일부만 가입도 포함)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1.1 ~12.31 간접비 입금 기준으로 성과급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템플릿 작성은 회계결산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 국가R&D 간접비 수익 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유서와 해당 증빙자료(수익금 명세서) 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회계결산서와 템플릿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와 해당 증빙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271~284)

('23.6.28, KISTEP 제도혁신센터)

질의사항	답변
2-3 학교(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 문의드립니다. 해당항목은 학교회계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은 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는 않음으로 해설서에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대학(사립)은 한 회계연도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중 등록금회계 보다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상황이 많은 연도가 발생하였습니다.(논문게재료 및 학술활동지원비) 간접비산출항목중 2-5 공통지원분관리운영비 역시 등록금회계만 인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비등록금회 계 관리운영비 의제가능 함으로 해설지침서에도 확인하였습니다.(해설서 176p) 하여 연구진흥경비도 비등록금회계로 의제가능 여부 문의 드리드립니다. (청운대)	○ 공통지원분관리운영비는 일부 대학의 재무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반영된 특례사항이므로 연구진흥경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회계 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은 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로 인정되 지 않습니다.
1.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에서 R&D계수 적용사업을 판단할 때 예시로 든 사업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 예산에 들어있는 다른 사업들도 포함해야 하는지요?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 가.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사업 나.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 다. 대학의 창의적인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라.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사업 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사업 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등 (동의대)	○ R&D계수 적용사업을 판단할 때작성지침상의 예시사업만 적용하십시오.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시사업에 반영되 어 있지 않은 사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아래는 지침서상의 예시 (R&D계수 적용사업 예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0.5),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0.5), 대학혁신지원사업(0.5),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0.5),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사업(0.25), 마이스터대 지원사업(0.2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_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 괄호는 사업별 R&D계수이나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의 경우 0%로 적용됨	
저희 대학은 2022회계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되어 연구비를 받았는데 R&D 계수 계상기준에는 LINC+만 표시 되어 있어서 LINC3.0도 동일하게 0.5 적용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아대)	○ LINC 3.0 도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Ⅳ.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10) = 국가연구개발사업(7) / 기타사업(3) 금액을 나눠서 입력했으면, 20-2.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Ⅱ.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산학협력단 전입금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여기에서 금액을 작성할때는 7로 작성해야하나요? 질의내역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라고 해서 7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가장 최근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10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을 7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안녕하세요, 기초템플릿 4.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작성중입니다. 1. 2022년도 학교 결산서-운영계산서-비등록금회계-5400 교육외수입-54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자료템플릿에는 54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넣을 수 있는 란이 없어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 2021년도 학교 결산서-운영계산서-비등록금회계-4420 기타교육외비용-44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자료템플릿에는 이를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없어서 어디에 넣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대)	○ 54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과 44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계정 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303호)”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5421 잡수입과 4421 잡손실에 포함해서 넣으시고, 해당 내용을 운영계산서 아래 쪽에 별도로 기재해 주십시오.
정보공시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7월중에 제출할수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제출사유서 기관장 날인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미제출 사유서는 따로 양식이 있나요? (한신대)	○ 미제출사유서 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간접비 지출액 중 산학협력단 일반행정시스템 개발비로 약 3억원을 지출하고 집기비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 금액을 2호서식 2-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을지대)	○ 해당 개발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며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학에서 판단하는 경우, 자산화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비 실사 시에 해당 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학(의과대학) 소속 연구팀(연구 부서)의 경우 연구지원 부문 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 부서(대학 연구소,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등) 만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특정 연구소에 속해있지 않고, 대학 전체의 연구 관련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열한 것입니다.	○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의 경우 부속연구기관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가 1억원이어야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가능합니다. 대학 전체의 연구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의 경우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지원부문 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의과대학 연구팀 담당 업무 - 교내 연구 과제(교비 자원 연구비) 공모 - 연구 자료 통계 분석 및 자문 지원 - 논문(영문) 교정 서비스 지원 - 연구 자료 그래픽 디자인 신청 - 대학 연구 진흥 사업 기획 등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의생명연구원 담당 업무 - 연구자원 관리 지원 : 연구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 연구센터 각종 학술행사 및 회의 지원 - 연구 행정 지원 : 연구 장비 및 시설 제공, 연구 센터 설비 유지, 보수 등 - 실험동물 관리 : 실험동물 관련 서비스 및 기술지원 (연세대)	

'23.8.8 추가 보완자료 제출 관련 Q&A

('23.8.11, KISTEP 제도혁신센터)

번호	질의사항	답변
292	(나사렛대) 작성지침 및 해설 p.22 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 자료 미제출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중 :연구지원부문-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및 :공통지원부문-공통지원 인정부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인별이 아닌 부서별로 통합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운영계산서상 "보수" 금액과 일치하므로 충분히 인정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증결과는 인건비내역 미체출로 전액 불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차 제출시 운영계산서를 제외하고 인건비내역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표준템플릿 양식(9번/10번)대로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는 삭제해 주십시오.
293	(동국대) 1. 작성지침 기준 -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작성지침 161페이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는 시설 및 장비의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비용에 한해 인정 :교원 연구실 지원 불인정 안내받음 2. 산학협력 길라잡이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2840(2023-07-12) 로 발송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책자 (1권 및 2권 FAQ) : 연구시설 공사 및 신입교원 실험실 공사를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로 집행 위 두 가지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차년도 예산 편성 이전 문의드리어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작성지침(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 따라 산출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294	(동국대) 1. [표준템플릿 9번] ☐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을 말씀주셨는데요. 그 외 자료들도 인정가능한 건지 또는 2가지 만을 인정하시는지요. ○ 지난 7월 20일 요청사항에서 합리적인 근거자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간편법에 따라 직전고시비율 적용하여 인정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제외되는건지요. 2.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별지 제1-2호/제2-2호 서식] ☐ R&D계수 적용사업 ○ R&D계수 적용사업 중 산학협력단회계와 교비회계에 모두 수익이 발생하였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만 발생하여 교비회계에서는 간접비수익이 없는 경우 R&D계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산학협력단 회계 50% & 교비회계 0% - 두 회계 모두 50%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입니다. 한편,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R&D계수 적용사업에서 간접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자료로 통해 증명하는 경우 R&D계수를 0%로 적용합니다.
295	(한라대) 8-1-1, 8-1-2, 8-1-3 작성은 정부만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비수혜실적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수혜실적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296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연구활동지원금 - 학회비: 추가불인정된 비용 중에 인정되지 않은 학회비용의 사유 문의드립니다. 학회비 중 인정과 불인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인정사유에서 사용용도가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기관공통비용 - 증권보험료: 추가불인정된 비용 중에 인정되지 않은 증권보험료의 사유와 국가 R&D만 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 정부융역과제가 국가R&D 포함 여부) 증권보험료 중 인정과 불인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체 소명서에 대하여 총장 명의의 직인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 소명서 직인 - 8월 4일에 제출한 검증결과 소명서에 산단장 직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안내해주신 추가 보완자료 요청 안내 메일에 산단장 날인 불인정이라고 쓰여있습니다. 1차 소명때 제출한 소명서의 직인을 총장직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97	(우송대)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표준템플릿 8번] 연구수익에서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교육수익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연구수익에서 제외되어 교육수익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2호 서식 2-7 연간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298	(한림대) 연구수익비용 산출내역 양식 2-2-1에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을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했었는데, 이번에 안내해주신대로 크림스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재작성 하라는 말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크림스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99	(한경국립대) 템플릿 10번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중 부속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인건비 내역은 기본 인건비는 제외하고 연구개발 성과급내역만 작성하였는데, 연구개발 성과급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관련 근거자료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중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관련 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00	(강원대) 1.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를 하라고 되었습니다. *연구지원범위 : 기획,협약,관리,집행,정산 ->연구지원범위 외 회계담당, 연구원인사담당, 구매담당 모두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통으로 보신다면 명확한 근거 제시 부탁드립니다. 2. 교내연구비.국가R&D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경우 겸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겸직으로 보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담으로 봐야할꺼같은데요 3. 부속기관, 단과대학 행정지원인력 -> 타임리포트 작성하면서 일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참전(1~2년)에 지난 걸 어떻게 작성하라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1~3번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하고,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또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 분장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개인정보인데 제출이 필요할까요? 5. 정보공시 관련 → 최초제출 전에도 8월 정보공시가 되면 수정제출해야해서 그 이후로 최초자료를 제출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많은 대학에서 건의했습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일을 두번씩 시키는 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없이 애매하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제대로 작성하기 매우 힘듭니다. 대학 실정을 잘 모르시고 진행하시는거같은데 대학을 좀 이해해주시고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4번. 산학협력단의 2021년과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번. 올해 8.30일 공시에정인 정보공시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02	(세종대) 작성(확인)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총장직인까지 요청하시여, 마감일(8월 22일)까지 맞추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303	(서울대) 1. 대면검증 이후 제출한 소명서의 수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국가R&D실적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 의하여 비전임 연구교원의 국가R&D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존 템플릿 양식 [9-7 및 10-7 연구소별 연구내역]에 추가 작성하여 국가R&D실적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공시자료 및 추가되는 템플릿에서 다뤄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외 대상인지요.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각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 내역을 별도 제출 확인	1. 1차 대면검증 이후 제출하였던 소명서를 포함하여 전체 소명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2.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검증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 [표준템플릿 9번 및 10번] 국가R&D실적에 직전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하는 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항 제외인지요. 2차제출 내역 기준 5-60개의 연구소 및 대학에 대하여 1,000여명의 개인별 업무내역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자료로, 위 자료를 비롯한 보완자료를 2주 내 준비하여 템플릿 작성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3.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4	(성공회대) 1.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 검증단 회계사님의 검토 결과 본교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의 인건비를 “산단 예결산도 함께 수행함으로 겸업, 공통으로 분류”라고 하셨는데, 재무회계팀 담당자가 대학 업무가 아닌 산단의 예결산, 산단 인사 업무하는 것을 겸직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2.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 산학협력단의 2021년과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모두 의무인가요? 3. 산학협력단 기관공통비용 - 검증단 회계사님의 검토 결과 보증보험료가 “과제 직접비 성격”으로 불인정됐습니다. 연구활동과 관련한 보증보험료는 이전에는 인정을 받았었는데, 인정.불인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4. 정보공시내용 중 장학금 수혜혜택 - 1차 자료 제출 시 실제 회계처리한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공시 기준 자료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5. 크림스 연구비수혜실적 - 2021년 실적 자료 중 오류사항이 있어서 수정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 예정인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1.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하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학협력단의 2021년과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하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4. 실제 회계처리한 수치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 기준 자료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크림스 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소명서를 제출하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05	(순천향대) 저희 대학에서는 이번 간접비 산출과 관련하여 1차 제출(6월 30일), 대면검증 후 2차제출(8월 3일), 추가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3차 제출(8월 3일)을 하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당황스러운 점은 1차 제출 후 대면 검증, 추가자료 제출 요청과 이번 8월 8일에 공지된 내용에서 모두 새로운 인정 기준과 양식이 계속 추가가 되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위원회 위원분들도 명확한 산출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꼼꼼히 검증해주셔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은 100% 이해 합니다. 그러나 각 대학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산출 기준이 매번 추가되고 변경되어 자료 작성에 혼란스러운 뿐만 아니라 매번 자료를 제출하고 산출 비율이 변경될때마다 사유를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업무도 발생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면검증 이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산출 기준과 양식은 다음 산출때 반영되어 2025년도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지침으로 처음부터 안내되어 산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건의 드립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306	(부경대) 1. 8-1-2.연구수익 조정 세부내역 중 연구비수혜실적과 운영계산서 상 수익 인식 기준이 다른데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연구비수혜실적: 과제시작일 기준 2021. 1. 1.~ 12. 31. 연구비 금액(입금여부 상관 없음) - 운영계산서 상 연구수익: 연구비 입금금액 기준 2021. 3. 1. ~ 2022. 2. 28. 2. 공공요금 관련하여 건물별 계량기 사진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진상 측정된 수치확인을 위한 추가로 자료 제출하라 하심은 대학에도 요청드리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고지서나 다른 증빙자료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산서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상 금액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별 계량기 사진 (전기/수도/가스) 및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계량일지 (과거 2년간 및 최근 사진상 측정된 수치 확인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	(경희대) 1. 제출 및 총장직인 관련 문의 : 추가 요청자료는 공문발송 필요 없이 대학별 폴더에 업로드 하면 되나요? 이 경우 별첨2. 체크리스트 6페이지 점검결과 부분 / 2번 간접비 원가산출 양식파일에만 총장직인 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체크리스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소명서 양식에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번호	질의사항	답변
	2. 인건비 관련 문의 : 지난 대면검증 시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만 해당하며, 연구지원 업무는 2-1-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을 참고하여 '연구기획'과 '연구관리'에 해당되는 인원만 연구지원부문으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번 추가 보완자료 제출 시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에 대해서도 연구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인원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된다고 기재되어있는데요. 이 경우도 '연구기획'과 '연구관리'에 해당되는 인원만 연구지원부문인지요?(사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연구지원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인원은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산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왜 공통지원부문인지도 문의드립니다.) 3. 단과대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문의 : 해당 단과대학에 행정지원인력으로 파견되는 직원은 연구지원업무를 위해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타임리포트라든지 문서생성목록을 제출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건의를 주셨는데 이 점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4. 대학정보공시 관련 문의 : 8월 대학정보공시가 아직 최종 업로드 되지 않았는데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시 완료 이후에 재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 1차 제출 시 작성했던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합니다. 3.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4. 올해 8.30일 공시예정인 정보공시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하고, 벌점은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308	저희학교에서는 LINC3.0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부 간접비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 R&D 계수를 0%로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R&D계수 적용사업에서 간접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자료로 통해 증명하는 경우 R&D계수를 0%로 적용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09	(동의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관련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 생성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록을 제출하면 인정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정지원실별로 생산되는 연간 1만개에 가까운 문서 중 연구지원에 관한 목록을 따로 추출하여 제출해야 함으로 행정지원실에 부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 추출한 목록이 연구지원에 포함되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추출하여 제출한 문서목록이 전체 대비 몇 % 안된다고 불인정 받게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헛고생만 할텐데... 인정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개인별 연간 전체 문서생성 목록을 분석하여 연구지원 문서생성 목록을 별도로 산출
312	(경남대) 1. 연구수익 -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간연구비가 조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수익으로 재분류 시, 해당 사업 비용도 교육비용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불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 예시 중 R&D계수 적용사업(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등) 운영 관련 비용들은 각 대학에서 적용한 계수만큼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하는 R&D계수 적용사업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인건비 - 저희 대학교는 교내연구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으며, 결재 라인 관련으로 국가 R&D와 교내연구비 관리 업무에 겸직발령이 된 인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겸직발령 인력은 국가R&D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위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반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2.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3.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4. 제출일 - 추가 검증 자료(템플릿 및 체크리스트) 검토 및 작성, 관련 부서 자료 협조 요청, 8월 정보공시 일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마감일정을 8월 22일보다 연장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8월 정보공시 완료 이후 관련 자료는 재검토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2023년도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관련하여 예전보다 당겨진 1차 제출 일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계속 기준이 추가되어, 자료를 수정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부디 산학협력단의 상황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용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313	(삼육대) 1차 평가 시 사업단, 연구단 운영비에서 회의비 항목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연구관련 회의이나 직접비성 성격으로 불인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추가요청자료에는 해당 내용은 없고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사업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315	(목포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지자체-대학협력기반혁신사업(RIS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우 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실제 간접비 비율 산출에 비용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간접비 비율 산출 수익 대비 비용 해당사업을 교육수익(수익만)으로 반영할 경우 연구수익비율이 낮아져 간접비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혁신사업의 경우 중심대학에서 참여대학 지분까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수익만 반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 비용 지출을 공통지원부분 관리운영비에 포함해도 되는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학(교비)회계 결산서상 반영된 수익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임의로 제외할 경우 허위자료 제출 및 고의 제출로 간주될 수 있음을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01	(순천대) 8. 정보공시내용을 토대로 8-1-1,8-1-2,8-1-3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1-1은 KRI에서 다운받아 그대로 제출 8-1-2은 8-1-1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 조정대상여부, 조정사유를 입력 -----> 조정대상여부와 조정사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 운영계산서상운영수익과목 작성하는 곳은 결산서 운영계산서에 해당되는 과목을 넣으면 되나요?? -----> 이렇게 결산한 기준으로 운영계산서운영수익과목을 작성하고 거기에 다시 조정대상여부를 한다고 하더라도...02템플릿 별지 1-2에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을 분리했었으니...원래 적용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더 차감하는게 아닌가요?? -----> 02템플릿의 1-2-1(2-2-1) 차감 부분에 넣을 값은 8-1-2 연구수익조정에서 조정후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 02템플릿의 1-2-2(2-2-2) 가산 부분에 넣을 값은 8-1-2 연구수익조정에서 조정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8-1-3은 8-1-2에서 실적판단과 조정사유 입력 -----> 작성시 유의사항 말은....연구비수혜실적(KRI)에 정부로 해 뒀으나... 다시 실적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RCMS, 통합EZbaro 사용하는것만 정부로 인정되고... 그걸로 다시 단대별로 조정하여 인건비 판단 기준인 국가R&D실적판단을 재작성하라는 말이죠??	작성지침과 표준템플릿 양식을 참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표준템플릿 8-1-1.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조사_대학정보공시(실집계)_연구비실적 조회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조회”에서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표준템플릿 8-1-2. 연구수익 조정 세부내역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이 “연구수익”인 과제 중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을 조정대상여부에서 “불인정”으로 기재하고, 그 조정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정금액(불인정)”은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으로 집계됩니다. 조정사유는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동물시험 용역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 운영계산서에 해당되는 과목을 넣으십시오. 별지 1-2-1(2-2-1) 및 1-2-2(2-2-2)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별지 1-2-1(2-2-1) 차감 부분에 넣을 값은 “조정금액(불인정)”입니다. 별지 1-2-2(2-2-2) 가산 부분에 넣을 값은 “조정금액(불인정)”입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템플릿 9 문의 -----> 단과대학 행정지원인력은 저번에 간편법으로 해 주셨는데... 간편법은 설명에 누락된거 아닌가요?? 대학이든.. 부속연구기관이든... 개인별 타임리포트는 무리입니다. 템플릿 11 문의 -----> 지출거래처가 대학인 경우 불인정이라는 말은..... 거래처가 학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불인정으로 하라는 말인가요?? ----->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소활동지원금과 국책수주지원금은 불인정인가요? 정액이 아닌 자체 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통과 후 시행되고 실비로 정산하는데요... 그리고 연구소활동지원금 지출 건들 중 연구소에서 사용한 회의비도 불인정인가요?? ----->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자산화금액 적성성확인에서 간접비 지출내역서 상의 간접비재원취득 자산금액과 일치함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우리학교의 경우 현금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체크하고... 자산화 금액은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였는데...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참고로 간편법이 아닌.. 원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8-1-3. 국가R&D실적 판단에서는 지원구분에서 “정부”로 구분된 연구과제 중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국가R&D실적에서도 제외합니다. 국가R&D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판단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국가R&D 실적 판단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출 거래처가 대학인 경우는 불인정 대상입니다(학교회계전출금 성격).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310	(협성대) 1. 표준템플릿 8번 - 크림스(KRIMS)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구비수혜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2021년도 연구비수혜실적 공시를 2023년도에 여러사유로 재공시를 하였습니다. 크림스에서는 입력기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추가자료는 크림스 시스템으로 하고 소명서는 재공시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 자체판단으로 각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수익 인정을 한 것에 대해서 추후 검증을 통해 불인정이 되는 경우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2. 표준템플릿 2번 - 2-2호 서식에서 기존과 다른것이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에 차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인데 그러면, 기존에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은 그대로 작성하고	1.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소명서를 제출하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2. 별지 1-2-1(2-2-1)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2-2-4의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도 기존 결산서 금액대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2-2-4의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도 기존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요? -2호서식 내 자산화금액 가산부분에서 선급금에 관한 세부내역은 이번 추가제출때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관련 증빙으로 지출청구서 및 내부승인사항외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이 필요한지) 3.표준템플릿 11번 -11-1 기관공통비용에서 보증보험료 및 기타 수수료에서 불인정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외 관련없는 사업이라 하면 템플릿 8번에서 불인정한 사업과 매칭이 맞아야 하나요? 기관공통비용은 산단 회계기간에 맞춰서 지출이 되는데, 크림스 시스템과는 집계기간이 다릅니다.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합니다.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과제)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관공통비용 등 관리운영비에서도 불인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11	(국민대) 1. 8-1-1.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관련 ▷ 각 산출연도의 KRIMS 시스템의 RAW 데이터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2. 8-1-2.연구수익 조정 관련 ▷ 8-1-1. 시트의 금액 그대로 원 단위로 환산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 "수익계정", "조정대상", "조정사유" 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성 시트의 예시대로 수익계정분류와 무관하게 다음의 규칙을 적용하여 연구수익으로 인정 되는게 맞는지요? ① 정부사업은 통합 RCMS와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② 민간사업은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 지자체 대행용역의 경우 템플릿 예시에는 "인정" 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안내문에는 "제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외 하는게 맞는지요? 취지 상 제외하는 것이 맞아 보이나 작성하는데 혼란이 있습니다. ▷ 결산상 수익금액에서 당해 시트에서 추출된 조정금액을 차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얼핏 생각했을 때 연구수익에서 차감 조정이 되었으면 관련 비용도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는데, 관련 연구비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1. 8-1-1.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조사_대학정보공시(실집계)_연구비실적 조회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조회"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업(과제) 중에서 정부사업은 통합RCMS와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사업은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회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동물시험 용역 등은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므로 연구수익에서 제외(불인정)됩니다. 템플릿 예시에서는 지자체 대행용역을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인정"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 대행용역을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불인정"으로 표기됩니다. 즉,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이 "연구수익"인 과제 중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대하여 조정대상여부를 "불인정"으로 기재하고, 그 조정사유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 8-1-3. 국가R&D 실적판단 관련 ▷ 8-1-2. 연구수익 조정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RCMS 및 통합 이지바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국가R&D실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기재된 다음의 내용 중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판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개별 과제별로 통합이지바로와 통합RCMS 상의 연구비 금액을 기재하라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시스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인가요? 3) 아니면 공통지원인건비 대상 부서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것인가요?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지원구분에서 정부로 구분된 집계액 중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판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인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판단 ▷ 8-1-3. 시트에는 단과대 칼럼이 없습니다. 따로 기재해서 단과대별 국가R&D 실적판단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체크리스트 제출 직인 명의 관련 ▷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직인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제출기한 연장 관련 ▷ 다른 대학도 의견을 주셨지만, 요구자료의 내용은 2년치를 전면 재작성하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작업량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6. 기타 건의사항 ▷ 자료 제시 기관인 대학에서 산출 기관 및 검증단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검증단에서 우수사례라고 생각하는 대학의 산출자료 및 작성내용을 익명화하여 공개하고, 아울러 소명 관련 전체 심의사례를 공유하여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별지 1-2-1(2-2-1) 및 1-2-2(2-2-2)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항은 연구수익비율 산출에만 적용하며,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을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3. 8-1-3. 국가R&D실적 판단에서는 지원구분에서 "정부"로 구분된 연구과제 중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국가R&D실적에서도 제외합니다.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문구는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국가R&D실적에서도 제외합니다. 국가R&D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판단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국가R&D 실적 판단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단과대 칼럼이 없는 경우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체크리스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소명서 양식에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지난 8.8일 공지되었듯이 금번 제출 시 총장 직인 날인

번호	질의사항	답변
	▷ 향후 산출 규정 개정 시 포괄주의 적용항목과 열거주의 적용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를 희망합니다.	이 없는 경우 자료 미제출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5.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6.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	8-1-2. 연구수익 조정 가. (2) 연구수익 세부 내역 중 지원구분은 8-1-1 연구비 수혜실적 전체 과제 등록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운영수익과목/조정대상 여부를 표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과제만 등록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1-3. 국가R&D 실적판단 가. 정부 집계액 중 통합Ezbaro 및 통합RCMS 과제인 경우만 국가R&D 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인건비 산출내역의 연구지원부문과 공동지원부문이 전부 재산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표준템플릿 8-1-1. 연구비수혜실적은 정부과제만 작성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표준템플릿 8-1-3. 국가R&D실적 판단에서는 지원구분에서 “정부”로 구분된 연구과제 중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국가R&D실적에서도 제외합니다. 국가R&D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판단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국가R&D 실적 판단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317	(서울시립대학교) 1. 표준템플릿 8번 (1) 1-2-1 에서 각 연구수익 금액은 결산서상 연구수익 금액을 기재하지만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2021년, 2022년도 정보공시 자료 기준 KRIMS 시스템의 RAW 데이터 기준으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결산서상 연구수익 계상기준과 정보공시기준은 기준연도도 다르고, 계상 기준도 다른데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차감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요?	별지 1-2-1(2-2-1) 및 1-2-2(2-2-2)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이 때 차감 및 가산 금액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 내역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2) 1-2-1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과 동일한 금액을 1-2-2 에서 가산)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에 넣는게 맞는것인가요? (3) 해당 금액을 연간연구비 금액에서 차감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국가R&D실적 : 정보공시 자료의 KRIMS에서 통합이지바로, 통합RCMS를 사용하는 과제만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는 비전임교원, 학생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통합이지바로, 통합 RCMS 사용)이지만 정보공시자료에 연구비 수혜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시 자료에서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분류한다면 실제 수행 과제보다 적게 실적이 잡히는 오류가 있습니다. 2. 표준템플릿 9번 (1)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자료는 앞으로도 필수 증빙이 되는것인가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해당 양식을 만들어 징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제출기한 연장 관련 (1) 다른 대학도 의견을 주셨지만, 2년치 자료를 거의 재작성하는 수준의 작업량이 예상되며 (2) 8월 정보공시 자료도 검증해야 하므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건의사항 (1)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현장에서는 담당자와 관련 부서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각 부서로 보내야 하고, 변경사항 보고 등 자료 재작성과 관련된 많은 행정력이 들고 있습니다. (2) 다른 업무도 하면서 간접비 산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도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지 1-2-1의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과 동일한 금액을 별지 1-2-2의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입력합니다.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8-1-3. 국가R&D실적 판단에서는 지원구분에서 “정부”로 구분된 연구과제 중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를 통한 총연구비를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국가R&D실적에서도 제외합니다. 국가R&D 실적은 전임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준입니다 현재는 금번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에 대한 질의사항만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향후 작성지침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고시비용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용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올해 8.30일 공시에정인 정보공시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18	(명지대학교)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 일단 국가R&D 실적 5건, 3억 이상의 기준(작성지침 및 해설 기준)에 맞춰 작성하였으나 대면검증 시 과다 책정이란 지적과 함께 전년도 간접비비율을 적용한 인건비를 적용하여 수정제출하였습니다. - 금번 보완자료의 경우 간접비비율을 적용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최초 인건비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각 대학은 1차 작성지침 및 해설서에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면검증 시 요구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조정(하향조정)하여 수정제출하였음에도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 등의 수집 및 제출이 어려운 추가 증빙을 요청하심은 무리한 요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연구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제공하여 주신 템플릿을 보면 비교란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국외출장과 보증보험료만 비교란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보증보험료는 전액 불인정 받았는데 그래도 비교를 작성해야 하나요? 3. 제출일 - 추가 검증 자료(템플릿 및 체크리스트) 검토 및 작성, 관련 부서 자료 협조 요청, 각 행정부서 근무자들의 휴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마감일정을 8월 22일보다 연장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너무 제출기한이 촉박합니다.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하고, 발점은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과제)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관공통비용 등 관리운영비에서도 불인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준템플릿상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올해 8.30일 공시예정인 정보공시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19	(원광대학교) 추가 확인 및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문서만으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지(목적)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학마다 상이한 실무에 따라 자체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부탁드립니다. PS. 대학들은 기존 평가를 준용하여 다음해 간접비사용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매년 간접비원가산출을 할 때마다 작성지침을 벗어난(명시되지 않은) 조정 및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대학 간접비를 적정하게 산출하기에는 기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면 간접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취지를 벗어나 국가에서 간접비를 줄이리려고만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금번 평가를 해보니 부족한 부분 또는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들을 공지하고 다음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학들도 취지를 이해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자료의 제출 및 대학 자체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20	(조선대학교) 1. [표준템플릿 9번]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저희 대학은 연구지원인력부문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에 해당되고, 파견하여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셨던 개인별 업무내역 및 업무분장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요~? 2. [표준템플릿 9번]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사실관계) 국가R&D 실적 5건, 3억원 이상(초기 작성 지침) 기준에 부합하여 작성하였으나, 적용 간접비율만큼 한도로 적용해서 인건비를 변경해서 작성해달라고 하셔서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or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질문1) 인건비 한도 적용 후, 다시 합리적인 근거자료대로 인건비 금액 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금액을 기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개인별 타임리포트 제출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에 대한 목록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증빙 자료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요?, 개인별 업무의 타임리포트를 쓰는 곳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예시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목록을 스크래핑하더라도 연구 관련 문서를 생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불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명서도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입니다.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 [표준템플릿 11번] 연구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사실관계) 경비용역비가 불인정항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음연도 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산학협력단 사업자 기준으로 연구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청소경비 용역을 계약하면 이 부분은 인정이 가능할까요? 4. [표준템플릿 15번] 공공요금 계량일지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질문) 고지서 및 납부내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지서 내용 안에 계량일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 합니다.	건물별 계량기 사진 (전기/수도/가스) 및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건물별 계량 일지(과거 2년간 및 최근 사진상 측정된 수치 확인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	(아주대학교) 추가 보완자료 제출 시 '총장 명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존 1차 제출 시 처럼 부득이한 경우, 총장 날인 대신 '산학협력단장' 날인 후 제출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보완자료 제출 마감기한 14일이라는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요청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소명서 양식에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지난 8.8일 공지되었듯이 금번 제출 시 총장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자료 미제출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322	[위덕대] 추가 보완자료 제출 관련 질의 1. 별도 공문 제출 필요 여부 2. 별첨2.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점검자(실무담당자/작성자)/실무책임자 여부) 확인자(실무책임자/산학협력단장 여부) 3. [표준템플릿]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업무분장에는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 →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인가요? 교육지원부문의 인건비 인가요? 4. [표준템플릿10] :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 → 간접비 작성지침에는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은	체크리스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소명서 양식에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점검자는 간접비산출 실무담당자 또는 실무책임자 모두 가능하며, 확인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겸직인원(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 관리를 동시에 수행)인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연구지원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기타 업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완자료에서는 기준이 변경된 것인가요? 연구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자(연구비 출금 업무)의 경우는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해도 되나요?	
323	[한경국립대] 인건비 연구지원 업무 범위 관련 질의 Q&A 300번 질문 답변을 확인하여 봤지만,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대학 업무 겸직 없이 산학협력단업무만 담당하나 직접적인 연구지원부서는 아닌 전체적인 산학협력단(연구 포함) 급여,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분류가 애매모호하여 재 질문드립니다. [질의내용] 제출요청사항 중 템플릿 10번 자체 임용직원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 부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면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하라고 하셨는데,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행정, 기획부서등)는 연구지원 업무만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연구지원 부문 인건비로 분류하여도 되는것일까요??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지침 p.13 확인)하고,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합니다.
324	[고려대] 추가 제출자료 문의 현재 간접비 원가산출 산정 기준이 활동별 원가 검증을 적용하고 있나요? 과기정통부에서 활동별 원가 검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제출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유사 활동별 원가 검증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행 산출기준과 맞지 않는 요청사항인 것 같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6월 30일에 자료 제출을 했고 및 대면검증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추가 요청사항을 공지와 공문으로 각 대학에 통보하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선되는 원가 산출방식에 적용하시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대학 간접비를 적정하게 산출하기에는 기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자료의 제출 및 대학 자체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 개선방안(안) ○ 정확한 간접비 비율 산출을 위해 산출방식 정교화 및 간접비 <u>예외과제 사전고지 의무화</u> 등을 통해 합리성 제고 - 개선 내용을 포함한 '간접비 관리 제도개선(안)' 마련·추진('23.10월)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현행</th><th>개선</th></tr> </thead> <tbody> <tr> <td>간접비 비율 산출방식</td><td> • 일부 재원만 반영 • 단순한 간접비 산출 기준 </td><td> • <u>비율 산출 시 반영되는 재원 확대 및 활동별 원가 검증</u> • <u>비용별 특성을 반영</u>하는 산출 기준 </td></tr> <tr> <td>고시비용 예외과제</td><td> • 협약 과정에서 임의 조정 </td><td> • 공모 과정에서 <u>예외사유 사전공지</u> </td></tr> </tbody> </table>		현행	개선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	• 일부 재원만 반영 • 단순한 간접비 산출 기준	• <u>비율 산출 시 반영되는 재원 확대 및 활동별 원가 검증</u> • <u>비용별 특성을 반영</u>하는 산출 기준	고시비용 예외과제	• 협약 과정에서 임의 조정	• 공모 과정에서 <u>예외사유 사전공지</u>	
	현행	개선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	• 일부 재원만 반영 • 단순한 간접비 산출 기준	• <u>비율 산출 시 반영되는 재원 확대 및 활동별 원가 검증</u> • <u>비용별 특성을 반영</u>하는 산출 기준									
고시비용 예외과제	• 협약 과정에서 임의 조정	• 공모 과정에서 <u>예외사유 사전공지</u>									
325	(우송대)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표준템플릿 8번] 연구수익에서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교육수익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연구수익에서 제외되어 교육수익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2호 서식 2-7 연간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지침에서 연간연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연구비 (⑦) (1) 연간연구비 산정기준 (정의)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상의 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상 연구개발용역 성격의 금액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번호	질의사항	답변
	위 지침에 따르면 연구수익에 대한 연구비만 연간연구비로 인정됩니다. 아래 2023년 대학간접비 관련 주요 추가 확인 및 수정 제출 요청사항에 의거하면 연구수익(2-2-1)에서 교육수익(2-2-2)으로 재분류하면, 교육수익(2-2-2)으로 재분류된 연구비 즉 2-7 연간연구비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로 회계처리된 지출분을 교육수익과 대응되는 비용 교육운영비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연간연구비가 조정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표준템플릿 8번] ☐ 연구수익 ☐ 대상 : 전체 대학 ☐ 목적 : 대학에서 제출한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중에서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구분하여 교육수익으로 재분류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326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연구비수혜실적 관련 문의 1.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는 기관고유연구사업(복지부 재원) - 해당 사업의 과제는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을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산학협력단 회계에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기관고유연구사업을 국가 R&D로 볼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비수혜실적에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사업을 기입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8번 템플릿 - 보완요청 공문에 추가된 시트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8-1-1: 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입력했던 모든 과제 기재 8-1-2: 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입력했던 모든 과제 기재 8-1-3: 연구활동실태조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만 기재 - 조정대상여부와 조정사유 또한 저희쪽에서 어느 지침을 보고 입력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표준템플릿 8-1-1, 8-1-2 및 8-1-3번 모두 연구비수혜실적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표준템플릿상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27	(부경대학교) 표준템플릿 8번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은 연구수익 제외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대학재정회계센터에 교육운영수익 계정분류를 질의 했을때 지원사업 성격은 인력양성사업이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일 경우 연구수익으로 사용하는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 성격의 경우 연구수익에서 제외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인재양성 사업명이면 전체 제외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업(과제) 중에서 정부사업은 통합RCMS와 통합 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사업은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동물시험 용역 등은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므로 연구수익에서 제외(불인정)됩니다.																											
328	(남부대학교) 8-1-1.~3번 작성시 교내 연구수익 실적도 작성하는지요? 아니면 정부,민간,지자체만 작성하는지요?	표준템플릿 8-1-1, 8-1-2 및 8-1-3번 모두 연구비수혜실적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329	R&D 계수 적용 관련 추가 문의 간접비 수익에 대한 내용은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 외에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산학협력단 결산서(결산자료)와 함께 예산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330	8-1-2. 연구수익 조정 세부내역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 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운영계산서상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크림스(KRIMS) 시스템 역설다른 금액은 전원단위이나 본 양식에서는 원단위이므로 일괄적으로 1,000원으로 환산 조정함 (1) 총연구비 조정 총괄표 (*) 연구수익 조정금액은 1-2-1(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자금”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기입하고 1-2-2(2-2-2) 교육수익 산출내역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기입함 <table><tr><th>구분</th><th>조정전 금액</th><th>조정금액</th><th>조정후 금액</th><th>검증</th></tr><tr><td></td><td>합계</td><td>불인정</td><td>인정</td><td></td></tr><tr><td>연구수익</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조정전 금액	조정금액	조정후 금액	검증		합계	불인정	인정		연구수익	-	-	-	-	(예시) <table><tr><th>구분</th><th>산학협력단 수익구조</th></tr><tr><td>국고/민간경상/지자체보조금사업</td><td>국고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지자체보조금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지침(요령)에 따라 관리</td></tr><tr><td>국가연구개발사업</td><td>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출연금 형태로 산학협력단에 지원</td></tr><tr><td>정부기관/지자체의 공공사업</td><td>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지자체의 공공 사업 : 지역센터사업, 클러스터사업</td></tr><tr><td>정부기관/민간 용역사업</td><td>정부기관/민간기관의 동물실험, 임상시험, 시료분석 용역</td></tr><tr><td>정부기관/민간기관의 기타 용역</td><td>자문용역, 공사용역, 행사용역, 건축물의 설계/감리용역, 서베이, 통계용역, 전시, 공연, 디자인용역, 시작품 제작용역, 기타 단순 조사용역 등</td></tr></table>	구분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국고/민간경상/지자체보조금사업	국고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지자체보조금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지침(요령)에 따라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출연금 형태로 산학협력단에 지원	정부기관/지자체의 공공사업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지자체의 공공 사업 : 지역센터사업, 클러스터사업	정부기관/민간 용역사업	정부기관/민간기관의 동물실험, 임상시험, 시료분석 용역	정부기관/민간기관의 기타 용역	자문용역, 공사용역, 행사용역, 건축물의 설계/감리용역, 서베이, 통계용역, 전시, 공연, 디자인용역, 시작품 제작용역, 기타 단순 조사용역 등
구분	조정전 금액	조정금액	조정후 금액	검증																									
	합계	불인정	인정																										
연구수익	-	-	-	-																									
구분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국고/민간경상/지자체보조금사업	국고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지자체보조금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지침(요령)에 따라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출연금 형태로 산학협력단에 지원																												
정부기관/지자체의 공공사업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지자체의 공공 사업 : 지역센터사업, 클러스터사업																												
정부기관/민간 용역사업	정부기관/민간기관의 동물실험, 임상시험, 시료분석 용역																												
정부기관/민간기관의 기타 용역	자문용역, 공사용역, 행사용역, 건축물의 설계/감리용역, 서베이, 통계용역, 전시, 공연, 디자인용역, 시작품 제작용역, 기타 단순 조사용역 등																												

번호	질의사항	답변
	(한발대) 08.정보공시내용 v1.6 -> 8-1-2.연구수익 조정 조정금액 관련 질의 질의1. 조정후 금액-인정 연구수익 금액은 8-1-3.국가R&D실적판단 시트의 실적판단에서 통합RCMS와 통합이지바로로 표기한 연구수익 금액이고, 조정금액-불인정 연구수익 금액은 8-1-3. 국가R&D실적판단 시트의 실적판단에서 통합RCMS와 통합이지바로가 아닌 연구수익 금액인가요? 질의2. 상기 (1) 총연구비 조정 총괄표에서 연구수익 "조정금액-불인정" 금액은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입력하고 "조정후 금액-인정" 금액은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입력하라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불인정되는 금액도 연구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부, 지자체, 민간연구비 인데 왜 불인정 조정금액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은 통합RCMS, 통합이지바로 로 처리된 연구수익만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대학에서 통합RCMS, 통합이지바로로 처리되지 않은 연구과제의 연구수익도 연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익입니다.	표준템플릿 8-1-2. 연구수익 조정 세부내역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이 "연구수익"인 과제 중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을 조정대상여부에서 "불인정"으로 기재하고, 그 조정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정금액(불인정)"은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으로 집계됩니다. 조정사유는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동물시험 용역 등"이 있습니다. 별지 1-2-1(2-2-1)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과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은 동일한 금액이며 차감 처리 혹은 가산 처리만 다릅니다.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업(과제) 중에서 정부사업은 통합RCMS와 통합 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사업은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동물시험 용역 등은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므로 연구수익에서 제외(불인정)됩니다.
331	(한발대) 국가지원금으로 집행한 연구실안전관리비 불인정인 이유에 대한 문의 간접비고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p.90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국립대학의 경우 「국비」 또는 「수입대체경비」 등의 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운영표에서는 비용이 재원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세출결산서상 당해년도 결산액(지출액)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에 포함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재원 구분 없이 인정함. 상기 내용에서 국가지원금으로 집행된 연구실안전관리비도 집행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왜 불인정이 되는지요? 왜 중복지원이 되는지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32	(한발대)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비용 중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집행비용 불인정에 대한 문의 간접비 자가검증체크리스트에서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LINC)의 간접비에서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집행비용에 대해 전액불인정 대상으로 분류하라고 하는데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은 간접비산출 지침이나 산출서 양식에도 R&D계수 50%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업내에서도 연구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만약, 전액불인정이 된다면 간접비 R&D계수 50%를 0%로 조정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표준템플릿 11-2.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SW중심대학사업/4단계두뇌한국21사업/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은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 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333	<1> 이번 추가 보완자료 제출 시 2021년과 2022년의 산학협력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매달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12개월 분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제출하는 인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2> 저번 대면검증 시 이번 제출까지는 창업보육센터 인원에 대하여 연구지원부분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 산단 채용으로 산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연구지원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매달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개월 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분으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합니다.

'23.8.8 추가 보완자료 제출 관련 Q&A 3차 (~344)

('23.8.17, KISTEP 제도혁신센터)

번호	질의사항	답변
334	(울산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소속된 병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도 본교 결산 대상의 연구수익은 아니지만 정보공시 대상으로 인정받아 연구비수혜실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병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경우, 8-1-2. 연구수익 조정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실제 결산 대상으로만 재분류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지 1-2-1(2-2-1)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템플릿 작성시 결산서상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항목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5	(목포해양대) 표준템플릿 11번의 거래처명 기재 필수입니까? * 작성시 유의사항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거래처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에 거래내역 및 거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비교예 국외출장여비는 출장자(소속/직책) 기재 및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는 관련 과제명 반드시 기재 (*) 기관공통비용은 산학협력단의 공통지원경비이므로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이외의 집행은 전액 불인정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명 요청함	템플릿 11번 작성시 거래처명 기재는 필수사항이며, 거래처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에 거래내역 및 거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336	(동명대) 8-1-1. 연구비수혜실적 중 지원구분의 '교내'는 제외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연구비수혜실적은 정보공시 내역을 등록하고 8-1-2 연구수익 조정에서 '교내'를 제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36번과 337번 동일 질문으로 동일 답변) 별지 1-2-1(2-2-1)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기존에 입력했던 결산서 금액을 유지합니다. 다만 추가된 표준템플릿(8-1-1, 8-1-2 및 8-1-3)을 적용하여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및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만 추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템플릿 작성시 결산서상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항목(예를 들어 교내연구)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7	(남부대) 8-1-1~3 연구비수혜실적 전체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교내연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과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내연구는 산학협력수입 - 연구수익 작성과 인정, 불인정 칸은 공백으로 비워두어야 하는지요? 그러면 조정금액에 교내연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38	(한국공학대) 두차례에 나눠 공지해주신 질의응답 확인 후 재질의 드립니다. 여러 대학에서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을 재분류 한 후, 연간연구비를 조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고, KISTEP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항은 연구수익비율 산출에만 적용하며, “연구활동과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을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 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KISTEP에서 주신 답변은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을 재분류 하는 사유일 수 있으나, 연간연구비 미분류에 대한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질의 드립니다. 연구수익과 교육수익 재분류 후, 연간연구비를 조정 하지 않는 "사유"를 문의 드립니다. 연간연구비 조정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이미 미조정으로 공지하셨기 때문), 조정하지 않는 배경을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 정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첨1)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에 따르면 산단 회계연도 기준(3.1~2.28)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 산서 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 혜실적(국가R&D실적) 상 금액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함에 유의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붙임2]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 침 및 해설 p.12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 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① 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및 대학 총장 결재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 제출 시 인정 ② 미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 시에는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불가로 의견 피력 가능
339	(서울여대) 1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연구활동지원금> 1. 기존 지침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인정항목에 있었기에 실험실에 우송료를 지원함 2. 새로 안내된 자료에 따르면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구입비, 시약재료, 장비사용료, 전산소모품, 논문게재 관련비용 구분 하라고 명기됨. 불인정항목(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경상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음. 3. 인정여부문의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경상지출비용은 연구활동지원금에서 불인정 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 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 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40	(우석대) R&D계수 적용사업 연구/교육 수입금액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접비가 존재하는 R&D계수 적용사업의 경우 연구/교육수입금액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연구비+간접비)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를 의미하나요? 총사업비(연구비+간접비) 금액으로 산출되면 연구비 사용금액인 연간연구비에 간접비 금액도 R&D계수 50%가 반영되어 질의드립니다.	연간연구비 산출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R&D계수 적용사업도 간접비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R&D계수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하나 검증절차 간소화 및 실무편의를 위해 간편 적용* 허용됩니다. * 간편 적용방법: 연간연구비의 가산항목은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 해당액을, 차감항목은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 해당액을 기재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 관련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직접연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적용 가능합니다.
341	(국민대) 연구수익 조정에 따른 연간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추가 확인 및 수정제출 요청사항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배포하신 수정작성요청 문서에 따르면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니 않음(page 2)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7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는 ▷ 가산)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항목도 기답변해주신 취지와 맥락대로 최초 제시한 금액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아니면 연구수익 조정 분류 결과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가산)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항목도 포함)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첨1)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에 따르면 산단 회계연도 기준(3.1~2.28)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산서 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상 금액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함에 유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42	(강원대) 8-1-2 및 8-1-3, 11-5관련 건의 및 문의사항 1. 8-1-1은 크림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로 가능하지만, 2와 3은 크림스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계산서 수익과목, 조정대상여부, 조정사유" 모두 직접 찾아서 기입을 해야합니다. 과제가 많은 대학들은 1000개 넘는 대학도 있는데, 이걸 수기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과제명으로 조정대상 여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융역과제의 경우 과업지시서나 착수계등을 확인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단에서는 과제협약 및 연구비 집행을 할뿐, 과제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시료분석, 자문, 공사, 설계 등등) 파악하기 매우 힘듭니다. 2. 크림스에는 대학자체(교내)연구비가 포함되어있으나,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학회계 재원 조정대상여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자료의 제출 및 대학 자체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템플릿 작성시 결산서상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항목(예를 들어 교내연구)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8-1-3(국가R&D실적판단)에서는 지원구분에서 “정부”로 구분된 연구과제 중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상 “통합Ezbaro” 및 “통합RCMS”를 통한 총연구비를 국가R&D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국가R&D실적판단에 해당사항 없는 항목에는 간단하게 조정사유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 8-1-3(국가R&D실적판단)에서 통합Ezbaro 및 통합RCMS 시스템 중 실적판단 제외분에 한해서만 조정사유를 기입하면 되나요? 용역이나 기타사업들은 국가 R&D실적으로 카운트가 안되는데 굳이 조정사유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4. 11-5 학생산재보험료는 운영계산서상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시 기관공통비용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따로 sheet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분야 아니라 다른 자료도 재작성 및 검토할게 많은데 너무시간 촉박합니다. 기초자료 작성지침 내용도 계속 수정해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데, 제출기한이 요청후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지만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장 부탁드립니다.	4. 11-5 학생산재보험료는 금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서는 기관공통비용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인정됩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342번 추가 질의] (군산대) 저희 대학도 같은 상황이라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크림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로 연구비관리시스템 및 조정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 연구과제 명과 관련서류(집행부서에 사정해서 받아낸 협약서 등)를 바탕으로 일일이 찾아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 사정사정해서 받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도대체 어느 성격에 해당하는지를 때려맞춰서(?) 진행하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대학 간접비를 적정하게 산출하기에는 기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자료의 제출 및 대학 자체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43	(성신여대) 연구수익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시 교육수익의 사용에 따른 연구비도 연간연구비에서 제외 요망 다른 대학 분들도 수차례 연구수익의 교육수익 재분류에 따른 연구비도 연간연구비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기계적인 답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첨1)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에 따르면 산단 회계연도 기준(3.1~2.28)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

번호	질의사항	답변
	[질문] 연구수익에서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교육수익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연구수익에서 제외되어 교육수익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2호 서식 2-7 연간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학 간접비 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서도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보완 요청사항입니다.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연구수익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면 연구수익비율이 감소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된 연구비를 연간연구비에서 차감하게 되면 저희 대학은 오히려 간접비실사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구수익의 계정분류 오류는 수정해야 하고 이 오류에 따른 비용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간접비 산출지침을 위해하는 것이며, 연구수익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를 강제하되 해당 연구비를 연간연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으로 간접비 산출비율을 낮추려는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교육수익으로 재분류 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연구비를 연간연구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상 금액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함에 유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붙임2]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p.12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① 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및 대학 총장 결재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 제출 시 인정 ② 미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 시에는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불가로 의견 피력 가능
344	(상지대) 템플릿 9-1-1.개인별 업무내역에 연구지원부문만 있는데...연구지원부문만 업무내역이 필요한 건가요? 아님 템플릿이 잘못된건가요?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에 대하여 표준템플릿 9-1-1. 개인별 업무내역을 추가로 작성 요청드린 사항이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하고,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또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 분장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별도질의 1	(‘8.9 동아대) 1. 대학소속 산단 인력 관련 ▶ 현황: 대학 인력이 산단에 파견근무(산단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하고,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에서 먼저 지출하고 산단에서는 추후 공문으로 인건비 내역을 받아 대학으로 입금해주고 있음 ▶ 질의: 표준템플릿 10번(추가 요청사항 p.4)에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직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대학에서 지출한 인건비를 대학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불인정(학교회계전출금 성격)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산단 같은 경우 템플릿 10번에서 아예 파견인력(대학소속)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템플릿 9번에 입력하라는 뜻인지? 템플릿 10번은 산단에서 바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입력하라는 뜻인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학진흥재단 기준에 따라 간접비사업비(인건비) 계정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뺀다면 운영계산서 금액과 템플릿 금액이 불일치하는데 관계 없는지? 2.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관련 ▶ 현황: 현재 기입력하여 제출한 단대 및 대학원 행정인력은 최초 제시된 기준인 국가 R&D 5건/3억 이상에 해당 ▶ 질의: 추가 요청사항 p.3에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을 한 인력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제시된 기준(국가R&D 5건/3억 이상)은 이제 사문화된 조항이 된건지? 모든 단대에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인원의 인건비만 인정하겠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기준에 국가R&D 5건/3억 이상에 미달하여 제외했던 단대 행정인력도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 되는지?	1.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직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대학에서 지출한 인건비를 대학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불인정(학교회계전출금 성격) 대상입니다. 한편,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작성지침(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 따라 산출합니다. 2.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지원업무가 명시된 업무분장 규정과 함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입니다. 한편,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별도질의 2	(‘8.10 세명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부분은 8번입니다. 그 중 2022년 회계년도 연구비수혜실적을 입력한 2023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입력 양식에서 간접비 및 대응자금은 필수 입력 부분이 아니어서 입력을 안 하고 업로드하였고 대학정보공시에도 연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8-1-1부터 입력을 하고 있는데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정보공시 수정한 후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업로드한 자료를 사용해도 될까요??	표준템플릿 8-1-1.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조사_대학정보공시(실집계)_연구비실적 조회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조회”에서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도질의 3	(‘8.10 청운대) 질의사항: 표준템플릿 8번 연구수익 - 추가제출로 8-1-1, 8-1-2, 8-1-3 템플릿이 추가되어 2차 제출요청이 있었는데요. 본 대학은 부처 확인해 본 결과 크림스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시된 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표준템플릿 8-1-1.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은 각 대학별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조사_대학정보공시(실집계)_연구비실적 조회_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조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대학 자체 사유로 인하여 다운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수혜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별도질의 4	(‘8.10 삼육대) 1차 평가때.... 사업단.연구단 운영비에서....회의비 항목을 다 불인정 받았습니다. 회의록 일일이 다 확인했으나 연구관련 회의이나 직접비성 성격으로 인정되어 불인정 인것 같은데.. 지금 보내주신 참고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별 불인정사항의 경우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별도질의 5	(‘8.11 위덕대) 1. 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판단하여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기관공통비용 중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사업(예시:어린이급식지원사업)의 보증보험은 불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 외에도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사업의 직원채용면접이나 사업설명회 참석 등의 출장비 등도 모두 제외하나요? 3.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하여 회계사님으로부터 수정사항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1. 국가R&D 연간 연구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겸직인원(교내연구비 관리와 국가R&D 관리를 동시에 수행)인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2.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과제)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관공통비용 등 관리운영비에서도 불인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하고, 별점은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은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에 따라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8.8 추가 보완자료 제출 관련 Q&A 4차 [~352]

('23.8.18, KISTEP 제도혁신센터)

번호	질의사항	답변
345	(신라대) 금번 요청('23.8.8)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2022년 사립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O차제출) → O차 제출란에 1차로 표기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2차 추가 제출 로 표기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23.8.8)에 따른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하지만 “2022년 사립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O차제출)” 제목은 실제 제출 차수로 기재합니다.
346	(안양대) 이번 추가 보완자료 제출 시 요청 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면 별첨 1 소명서는 제출 없이 별첨 2 체크리스트와 별첨 3 템플릿만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23.8.8)에 따른 산출 기초자료에 소명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첨 2 체크리스트와 별첨 3 템플릿”, 및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엑셀 및 날인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47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1차 소명자료로 제출한 값을 그대로 입력해야하는지, 소명자료 입력 전 최초에 제출한 값대로 입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번 템플릿에 작성자, 확인자, 소속기관 서명 및 직인 기입하여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체크리스트의 점검결과 확인자는 팀장직급이상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산학협력단 직인 및 세무대리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확인 및 수정 요청사항과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 각 대학에서 소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은 먼저 확인 요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시고, 소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하기 확인 요청사항은 산출 기초자료에 선반영하여야 합니다. 2번과 3번. 체크리스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소명서 양식에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한편, 점검자는 간접비산출 실무담당자 또는 실무책임자 모두 가능하며, 확인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텍스 신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48	(교통대)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박경화 입니다. 2023년 대학간접비 추가 보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및 요청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및 요청사항) 1.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수익금액을 구분하여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간접비 산출 양식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에서 차감되는 것은 맞겠지만 교육수익 산출내역에 가산되는 것은 맞지 않음 *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타수익은 교육수익이 아님, 교육수익에 해당되는 것만 교육수익으로 가산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2. 연간연구비를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산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산서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상 금액으로 연구수익금액을 확정한다면,, ①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상 연구수익은 계약(협약)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협약)금액이어서 산단회계처리규칙 기준(진행률)에 의해 작성된 운영계산서상 (현금)수익금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연구비를 산단회계처리규칙 기준에 의해 작성된 운영계산서상 (현금)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작성된다는 것은,, 수익,비용 원가산출 적용기준도 다르고, 산단회계처리규칙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기에 연간연구비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연간연구비를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에서 인정된 연구수익 총액(100%사용)으로 조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③ ②번 반영이 어렵다면 적용기준은 다르지만, 1번질의에 해당되는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타수익" 차감금액은 연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연구비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3. 제출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을 알기에 기준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1번과 2번.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첨1) 2023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 요청사항’에 따르면 산단 회계연도 기준(3.1~2.28)으로 회계처리된 운영계산서 상 금액이 아닌 정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상 금액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함에 유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붙임2]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p.12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① 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및 대학 총장 결재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 제출 시 인정 ② 미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 시에는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불가로 의견 피력 가능 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이하 벌점 및 감률 기준)」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번호	질의사항	답변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자료의 제출 및 대학 자체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49	(서울여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중에서 학교 업무를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업무의 비중과는 관련없이 산학협력단을 총괄하는 대학 소속의 산학협력단 팀장의 경우는 무조건 공통인건비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문의함.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지원부문으로 분류하고,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와 대학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또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 분장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합니다.
350	(한밭대)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 등 간접비 수익은 있으나 간접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의 R&D계수를 현행 50%에서 0%로 조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D계수 적용사업에서 간접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자료로 통해 증명하는 경우 R&D계수를 0%로 적용합니다. 질의와 같이 간접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R&D계수를 0%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51	(동명대) 11-12. 자산화금액(간편법) 에 (4)간접비 재원으로 취득여부 검토 필수사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간편법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금액과 당기증가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1) 금액이 다르게 산출되더라도 당기증가액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간접비 취득 자원 취득여부가 x일 경우 모두 불인정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1-12. 자산화금액(간편법)을 적용하더라도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물품성 장려금, 연구장비 등은 간접비 재원이라 하더라도 불인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의사항	답변
352	(인제대)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의 p34의 '사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중 전입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인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서 제외하되,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가능' 질문 1.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여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p161 '개별 항목별로 등록금회계나 비등록금 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외에 추가 유의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다음회차의 간접비 산출 시, 이번과 같이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도 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고 계신데, 추가 보완자료 제출 및 요청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답변으로 그대로 받으려 시간과 공을 들여 질문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 조차 막으실 거라면 최소한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안내 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성의있길 바라는것은 욕심일까요. 저 또한 답답한 마음에 짧게나마 남겨봅니다.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정 및 제출을 위하여 금번 요청을 통해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최초 제출로 간주합니다. 한편,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 대학에 한해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가 능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의 계속성 원칙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금회계나 비등록금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필요시 상기 사항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제출해 주시 면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